

관세연구 15-01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의 국제비교 연구

2015. 8

세 법 연구 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재호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미영 특수전문직3급

홍현표 위촉연구원

목 차

I. 서론	7
II.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	9
1. 원산지 제도	9
가. 원산지규정의 개념	9
나. 국제법상 원산지규정	12
2.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	14
3. 주요 법령상 원산지규정	19
가. 관세법	19
나. 대외무역법	23
다. FTA 관세특례법	26
III. 주요국의 원산지 관련 법령	30
1. 일본	30
가.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	30
나. 원산지규정 체계	35
2. 호주	40
가. 비특혜	40
나. 특혜	43
3. 미국	47
가. 비특혜	47
나. 특혜	54

4. EU	59
가. 비특혜	61
나. 특혜	63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68
1. 우리나라 원산지 법령체계의 문제점과 선행연구 검토	68
가. 우리나라 원산지 법령체계의 문제점	68
나. 선행연구 검토	72
2. 국제비교 및 시사점	77
V. 소 결	81
참고문헌	83

표목차

〈표 II-1〉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	16
〈표 II-2〉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주요 법령	18
〈표 II-3〉 관세법상 원산지 관련 규정	20
〈표 II-4〉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관련 규정	24
〈표 II-5〉 FTA 관세특례법상 원산지 관련 규정	27
〈표 III-1〉 일본의 원산지 증명서 구분	31
〈표 III-2〉 일본의 원산지 관련 법령	35
〈표 III-3〉 일본 원산지 관련 주요 법령의 원산지규정 분석	40
〈표 III-4〉 호주 원산지 관련 주요 법령의 원산지규정 분석	46
〈표 III-5〉 미국 원산지표시제도	49
〈표 III-6〉 미국의 비특혜 및 특혜 원산지 관련 법령근거	53
〈표 III-7〉 미국의 협정별 국내법 규정	55
〈표 III-8〉 미국의 NAFTA 및 이행법	57
〈표 III-9〉 미국 관세법시행규칙상 한미FTA의 원산지 관련규정	58
〈표 III-10〉 EU의 원산지 관련 신관세법 조항	60
〈표 III-11〉 EU의 원산지 관련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조항	61
〈표 III-12〉 EU의 Pan-Euro 원산지규정의 구성체계	67
〈표 IV-1〉 우리나라의 원산지 증명서 구분	70
〈표 IV-2〉 원산지 법령체계 관련 선행연구 요약	76
〈표 IV-3〉 FTA 특혜원산지 법령의 국제비교	80
〈표 IV-4〉 비특혜원산지 법령의 국제비교	80

I. 서론

- 원산지규정(ROO: Rules of Origin)은 국가 간에 거래되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제반 법률, 규정 및 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범으로, 최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심화와 회원국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FTA의 범세계적 확산에 따라 국제통상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점차 증대되고 있음¹⁾
 - FTA 특혜관세 적용물품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 규정의 적용 등을 결정하는 원산지규정은 무역 원활화 비용과 유사한 행정비용 및 수입관세와 유사한 생산비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또다른 형태의 보호무역 정책수단으로 간주될 수도 있음

-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통관절차상의 원산지 요건을, 「대외무역법」에는 국내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어 원산지제도를 운영해 왔음

- 또한 2004년 이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2015년 현재 약 50여개국과 11개의 FTA가 발효된 상태이며, FTA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FTA 관세특례법」을 제정하여 FTA의 국내 시행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FTA 관세특례법」은 자유무역협정의 보편적인 사항을 국내법령체계로 수용하는 한편 협정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제정법²⁾

-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혜원산지 및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여러 법규에 규정되어 있어 법

1) 김상겸 외 3인,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 과제』, 연구보고서 11-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p.30.

2) 유광현·김형철·신성식, 「한·미 FTA 원산지검증 절차를 위한 관세특례법 개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1호, 2011. 2, pp.189-209, p.191.

령체계가 복잡해지다가, 일부 규정은 상호 중복되어 원산지제도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원산지규정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 FTA 체결의 효과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의 복잡성을 완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체결 FTA의 수가 늘어나면서 원산지규정이 또다른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FTA 효과를 반감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³⁾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주요 교역국의 원산지 법령체계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원산지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파악해 보고자 함

□ 본 보고서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Ⅱ장에서는 원산지규정의 구성과 국제규범상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와 주요 법령상 원산지규정을 분석함

○ 제Ⅲ장에서는 주요국으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 가운데 일본, 호주, 미국, EU의 전반적인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비특혜 및 특혜 목적의 원산지규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분석함

○ 제Ⅳ장에서는 현행 원산지 관련 입법체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FTA 확대에 의한 무역환경에서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의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3) 김한성·조미진·양주영, 『무역활성화를 위한 특혜원산지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2009. 7, p.119.

II.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

-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와 「관세법」, 「FTA 관세특례법」 및 「대외무역법」 등 주요 법령상 원산지규정 체계를 분석해봄

1. 원산지 제도

가. 원산지규정의 개념

-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호혜적으로 관세양허 등 특혜 조치를 취할 때나, 저가 수입 물품에 대한 덤핑관세를 부과하거나 긴급수입 제한조치 또는 수입 수량을 할당하는 경우 적용 여부를 원산지⁴⁾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은 각국의 무역제도와 연계되어 비관세장벽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
 -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엄격한 원산지판정기준 도입을 통해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숨겨진 무역장벽으로 작용함⁵⁾
- 원산지규정은 그 적용목적에 따라 이론적으로 관세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특혜원산지 (preferential rules of origin)와 관세 특혜 이외의 목적으로 적용하는 비특혜원산지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규정으로 구분될 수 있음

4)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닌 하나의 국가를 의미하나, 한 나라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또는 중국 귀속 후 홍콩 등과 같이 국가가 아닌 특정지역도 독립관세 영역이나 자치권보유국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원산지가 될 수 있음. 그러나, EU, NAFTA, ASEAN 같은 정치적·경제적 독립체가 아닌 지역협력체인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가 될 수 없음

5) 김상겸 외 3인(2011), p.33.

- 다만 이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적용 목적에 따라 분류한 것이나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개념임
 - 「WTO 통일원산지규정」은 비특혜원산지규정에 적용되고 「EU 관세법」의 경우에는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특혜원산지규정은 일반특혜관세, 개별 도상국가 특혜관세제도 등과 같이 일방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거나, 자유무역협정 또는 특혜무역협정 등 양자무역협정 회원국 간에 상호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데 적용됨⁶⁾,
 - FTA, 관세동맹의 원산지규정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남북원산지합의서, 아·태무역협정, 관세관계법령, UNCTAD의 개도국간 무역특혜제도(GST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등에 적용

- 배타적인 자유무역지대의 역내 후생증대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수혜대상 판단에 사용되며, 우회수입을 방지하고 역내 가공·교역과 외국인투자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⁷⁾
 - 엄격한 특혜원산지규정으로 역내 교역 증대라는 무역창출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생산비용 유발, 무역과 투자왜곡 등 후생감소가 초래될 수도 있음

- 한편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산지표시, 덤핑방지관세부과 제외 등 특혜관세 적용 이외의 목적을 가짐
 - 특정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실시할 때 원산지 식별이 필요하므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조치에서 원산지 식별은 물론 제소대상이 된 상품의 유사 상품이나 국내산업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적용⁸⁾

6) 김석오·정재완, 「특혜원산지 입법체제 간소화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0-1집, 2010. 4, pp.44-76, p.46.

7) 김상겸 외 3인(2011), pp.31-32.

8) 김상겸 외 3인(2011), pp.31-32.

- 각 국가의 국내법, 다자무역협정이나 지역경제연합 등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일국의 무역정책 운영상 상품의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됨⁹⁾
 - 각국의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령, 농수산물질법 및 국제법 가운데 WTO 통일원산지규정 등이 이에 해당함

- 원산지규정은 내용에 따라 ‘원산지판정’, ‘원산지확인’ 및 ‘원산지표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FTA에서 채택하는 원산지규정은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확인규정으로 구성됨¹⁰⁾
 - 원산지판정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실체적인 규정이며, 원산지확인규정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실제로 증명하고 검증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음

- 원산지판정은 해당 물품이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등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여 특혜관세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음

- 교토협약(특별부속서K)과 WTO 원산지협정 등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으로 나누어 규정하며, 우리나라의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함¹¹⁾
 - 완전생산기준이란 물품이 한 국가에서 완전히 획득·생산 또는 사육, 번식된 경우에 당해국을 원산지로 인정
 - 세번변경기준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는 경우 원재료와 완제품의 HS코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2단위, 4단위 또는 6단위 변경 여부를 통해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부가가치기준은 당해 물품에서 차지하는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 비율(부가가치율)을 산출한 후 일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차지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9) 김상겸 외 3인(2011), pp.31-32.

10) 김석오, 정재완(2010), p.48.

11) 김석오, 정재완(2010), p.48.

- 원산지확인(原産地確認)은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 국가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원산지증명과 원산지검증 등의 행정적 절차들을 포함함¹²⁾
 - 원산지증명은 법령에 규정된 기관이 법령에 정해진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특정 물품에 대하여 특정 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증명하는 절차
 -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들이 원산지검증 또는 원산지조사에 해당함

- 원산지표시(原産地表示)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현품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

나. 국제법상 원산지규정

- 국제법상 원산지규정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을 시작으로 국제무역사회에서 대두되기 시작함

- 1947년 GATT 제9조 원산지표시(Marks of Origin)에서는 회원국들에 대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를 권장하면서 이에 따른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해소할 것을 명시할 뿐,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한 특정 규범을 제시하지는 않음¹³⁾
 - 일반적인 최혜국 대우(General 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원칙으로 하는 협정이기에, 체약당사국 영토의 상품에 대해 제3국의 동종상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고,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법령을 채택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출국의 상거래와 산업에 야기할 수 있는 어려움과 불편이 최소화되어야 함을 인정하도록 명시

12) 박광서 외 5인,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원산지제도 관세법 일원화 및 합리적인 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2014. 12., pp.25-26.

13) 김상겸 외 3인(2011), p.37.

- 이후 1980년대 말부터 호혜무역협정 수가 급격히 늘면서 다양한 원산지규정이 생겨나고 반덤핑법규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원산지규정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1974년 EU 관세협력이사회에서 체결, 1999년 개정된 개정교토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의 일반부속서(원산지규정(D.1.), 원산지증명(D.2.), 원산지증명관리(D.3.))에 원산지규정을 포함시켜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에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함
 - 특혜관세 적용이나 여타 절차상 필요한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허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원산지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하는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을 구분하여 제시하며, 실질변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기준 및 가공공정기준을 세분하고 있음
 - 선택적으로 수락 가능한 특별부속서 K 원산지(Rules of Origin)에서는 원산지증명과 확인 등 주로 절차와 기술적 사항을 규율하는 기준과 권고관행을 제시함

- 개정교토협약은 원산지규정에 관한 최초의 국제규범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내용과 효력 면에서 미비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국제협약으로서의 규범이 약한 반면, 1995년 WTO 협정상 원산지에 대해 명시한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WTO 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은 오늘날의 원산지규정의 형태를 제시하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범을 포함하고 있음¹⁴⁾
 - Part I 정의와 범위, Part II 활용 규칙, Part III 공지, 검토, 협의, 분쟁해결에 관한 행정절차, Part IV 원산지규정의 통일 및 부속서 I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 부속서 II 특혜원산지규정 관련 공동성명 등으로 구성
 - 일반적으로 비특혜 무역정책 수단에 사용되는 원산지규정에 적용하는 것이나, 부속서 2의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후 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에 대

14) 김상겸 외 3인(2011), p.40.

한 일반적인 원칙 및 지침을 제시함

- 이러한 국제규범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해석·적용하여 원활한 무역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WTO에서는 보다 명료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1995년 개시된 WTO 통일원산지규정 협상은 관세특혜로 귀결되는 특혜협정이 아닌 비특혜원산지규정으로서 모든 교역품목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판정기준을 결정하고자 개시되었음
 -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일반규정과 부속서 I(완전생산품의 정의)와 부속서 II(품목별 원산지규정)으로 구성됨
- 하지만, 방대한 작업량과 기술적 쟁점의 복잡성, 협정의 적용범위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현재까지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임

2.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

-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규정의 기본 골격은 기본적으로 개정교토협약의 원산지 관련 부속서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964년 「관세법 시행령」에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1991년 「대외무역법」에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한 이래 여러 관련 법령에 원산지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0년 5월에 개정교토협약 일반부속서 원산지규정(D.1.), 원산지증명(D.2.)에 가입함
 - 1964년 「관세법 시행령」에 협정관세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규정을 두어 최초로 특혜원산지에 관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관리제도를 마련하게 됨
 - 원산지표시제도는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1991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대외무역법령에 원산지 판정 기준, 원산지표시대상품품, 위반 시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세법령에는 통관 시의 원산지 및 그 표시의 확인 및 시중 유통 과정에서의 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음

- 계약당사국 간 합의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FTA와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공여하는 무역협정 등을 특혜원산지 관련 국제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WTO 통일원산지규정은 비특혜 분야에 속함
 - 2015년 6월 현재 우리나라와 체결, 발효된 FTA는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미 FTA, 한-터키 FTA, 한-호주 FTA 등이 있음
 - 일방적으로 특혜관세를 공여하는 무역협정으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등이 있음

- 국내법상 원산지 관련 법령으로는 특혜원산지 분야의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과 비특혜원산지 분야의 「대외무역법」,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¹⁵⁾
 -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부과·징수 및 특혜관세 부여를 위한 원산지결정 및 확인,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을 목적으로 함
 - 「FTA 관세특례법」에는 자유무역협정 대상물품의 우회수입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과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를 규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교역물품에 관한 원산지확인, 통관관리 등을 규정
 - 「대외무역법」은 일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판정 및 확인에 관한 기본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표시를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5) 박광서 외(2014), pp.33-34.

- 이밖에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가축전염예방법」, 「식품위생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의 법령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품목별 원산지 관리를 규제하고 있음

〈표 II-1〉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

구분		국제법	국내법
특혜 분야	FTA 특혜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미 FTA, 한-터키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반 특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 WTO 개도국간 협정(TNDC) • UNCTAD 개도국간 협정(GS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비특혜 분야	WTO 통일원산지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축산물가공처리법」 • 「가축전염예방법」 • 「식품위생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특혜/비특혜	WCO 개정교토협약(부속서 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 • 「관세법」

자료: 박광서 외 5인(2014), p.32.

- 우리나라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제도는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에서 「관세법」과 「FTA 관세특례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음

- 「관세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229호, 2011. 8. 4. 제정,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을 2011년에 마련함
 - FTA 특혜관세의 적용, 자율발급에 따른 인증수출자제도의 운영에 관해서는 「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103호, 2014. 11. 20., 일부개정, 관세청 규제개혁담당관),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등의 행정규칙에 따름
 - 기타 통관요건에 관한 세부규칙으로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14-102호, 2014. 11. 19., 일부개정, 관세청 통관기획과),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24호, 2013. 5. 6., 전부개정,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 기획담당관실) 등이 있음
- 다만, 「FTA 관세특례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외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규칙인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36호, 2014. 8. 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에 따름
- 원산지표시 등 비특혜원산지 관련 제도는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고 있음. 다만, 농수산물 등 품목별로 소관부처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령은 해양수산부와 농림수산자원부에서, 남북교역물품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관리하는 등 각 소관부처를 두고 있음
 - 비특혜원산지와 관련한 대부분의 원산지규정은 행정규칙인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95호, 2015. 5. 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에 따름

-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관련 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7호, 2015. 1. 30. 일부개정, 관세청 특수통관과)에 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조사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표 II-2〉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주요 법령

주관부처	법령	주무부서	행정규칙
기획재정부	• 관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관세청 특수통관과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담당관실	•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관세법」 제76조)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	-
	• 아시아 · 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기준 등에 관한 규칙 (「관세법」 제229조제3항)		
• FTA 관세특례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FTA 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담당관	•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 대외무역법 ·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 대외무역관리규정
		관세청 특수통관과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 원산지표시 검사업무 및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요령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http://cert.korcham.net/html/origin2/co01_02_02.jsp), 2015. 6. 3. 조회

3. 주요 법령상 원산지규정

-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주요 법령이라 할 수 있는 「관세법」, 「FTA 관세 특례법」, 「대외무역법」의 원산지규정 체계와 내용을 살펴보고, 중복되거나 상이한 규정의 여부를 파악해보고자 함

가. 관세법

-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원산지제도와 관련하여 원산지표시대상품품에 대한 통관요건(제226조, 제227조, 제230조 및 제231조), 원산지확인기준(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제233조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조사 절차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 통관요건: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제230조의2(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 물품의 통관 제한),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 원산지확인기준: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제232조(원산지 증명서 등),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 원산지확인 및 조사: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표 II-3〉 관세법상 원산지 관련 규정

주요내용	법	령	시행규칙
통관요건 (원산지표시)	제226(허가·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제230조의2(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제233조(구비조건의 확인), 제234조(의무의 면제), 제236조의9(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원산지 확인기준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	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제75조(특수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제76조(직접운송원칙)
원산지 사전확인	-	제236조의2(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제236조의3(사전확인서 내용의 변경) 제236조의4(원산지확인위원회)	-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236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제77조(원산지증명서확인 자료의 제출기간)
원산지 조사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제233조의2(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제236조의5(원산지정보수집·분석 업무의 위탁) 제236조의6(원산지증명서확인 자료등) 제236조의7(수입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등 확인요청) 제236조의8(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절차 등)	제77조의2(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 제77조의3(조사 전 통지)

자료: 저자 작성

- 원산지표시대상품품에 대한 통관요건으로,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세관장 확인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품질 등 허위, 오인표시 등 구비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통관을 제한하거나 유치할 수 있음
 - 요건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확인·증명하는 절차로,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대외무역법」에서 정함

-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을 협의하기 위해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함

- 원산지확인기준 또는 원산지결정기준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판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WCO 개정교토협약을 토대로 하여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을 사용하고 있음
 - 완전생산기준은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실질변형기준은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 등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결정하는 기준
 - 실질변형기준으로는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하는 세번변경기준,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 주요공정·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및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입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일반특혜관세¹⁶⁾·국제협력관세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 1.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3조의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TNDC): 별지 제17호의3서식
 - 2.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5조의 유엔무역개발회의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 별지 제17호의4서식
 - 3.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4조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APTA): 별지 제17호의5서식
 - 4.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법 제76조): 별지 제17호의6서식
 -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 물품: 별지 제17호의7서식
 - 6. 그 밖에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 등 국제협력관세(법 제73조) 또는 편익관세(법 제74조)를 적용 신청한 경우로서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한정함
-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원산지 운영고시 제39조)
-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 법 제232조의 2에 따라 수출물품 중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원산지운영고시 제24조)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특혜를 받기 위해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되는 물품
 -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이 관한 의정서(TNDC)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 유엔 무역개발회의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
- 16)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특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법 제76조)

- 남북교역물품(북한으로 반출되는 것)
- FTA 협정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
- 기타 우리나라산 물품이 특혜관세를 공여받는 경우

- 한편,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관세법, 조약 또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 확인의 충족 여부, 기타 관세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들을 확인 또는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사전확인제도를 두고 있음
 - 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안에 사전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전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이를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확인위원회를 두어 사전확인, 이의제기 및 변경에 관한 사안을 심의함
- 원산지물품의 통관이 완료된 후 사후관리의 하나로 세관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거나 상대국으로부터 이를 요청받은 경우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통해 원산지를 확인함
 -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 물품공급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원재료내역서 등의 자료를 말함
 - 「관세법」 및 「FTA관세특례법」 및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결정 또는 검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음

나. 대외무역법

-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1971년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하면서 기본법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여, 2010년 원산지표시에 관한 별도의 장(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을 신설하였음
- 원산지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수출입물품 가운데 ‘원산지표시대상품품’을 지정하고, 원

산지표시, 원산지판정기준, 원산지 사전확인,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원산지확인, 원산지표시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 II-4〉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관련 규정

주요내용	법	령
원산지표시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①②③④	제55조(원산지표시대상품품 지정 등)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판정기준	제34조(원산지 판정 등)①②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원산지 사전확인	제34조(원산지 판정 등)③④⑤⑥⑦	제57조(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제62조(원산지 판정 절차) 제63조(이의제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36조(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제37조(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제6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제66조(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 제67조(단순한 가공활동)
원산지 확인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⑤	제57조의2(서류검사)
원산지표시 위반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53조의2(벌칙) 제55조(미수범) 제56조(과실범) 제57조(양벌규정)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9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6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60조의2(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 제60조의3(자료의 요청)

자료: 저자 작성

- 원산지표시대상품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원산지표시대상품품으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계기된 HS 4단위의 품목으로, 원산지표시방법은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일반물품, 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물품, 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 등에 대해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하는데,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수입물품과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내지 제87조에 규정하고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공여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에 정하고 있음
 - 실질적 변형기준으로는 해당국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다른 기준을 사용할 수 있음

- 원산지표시대상품품에 대하여 미리 수입물품에 관한 적정한 원산지 표시방법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여 각각 7일, 6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도 가능함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원산지제도운영고시」(제2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제22조(원산지 판정), 제23조(이의제기))와 「대외무역관리규정」(제84조(원산지 표시의 확인 및 이의제기))에 구체적인 절차를 담고 있음

-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원산지 확인절차를 거치며,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이행하기 위해 또는 교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에 의해 권한 있는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한 물품 등과 관련 서류를 검사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자를 공표하는 등 각종 벌칙을 부과함
 -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과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가장하는 경우를 제재
 -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표시 등 시정조치와 함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위반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음
 - 또한 원산지표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양벌규정이 적용되며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 과실범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FTA 관세특례법

-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FTA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례법의 성격을 가지되,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함
 -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국내산업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원산지조사절차, 체약상대국 간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국내법 체계로 수용하고 「관세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향후 체결되는 FTA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2005년 제정하여 2006년 3월부터 시행
 - 우리나라가 최초로 체결한 칠레와의 FTA가 2004년에 발효되어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을 시행하다가 2005년에 이 법으로 통합, 2006년 싱가포르와의 FTA부터 적용
- 추가로 FTA가 체결될 때마다 이 국내법에 조항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운영, 현재 총25개 조항을 두고 있음
 - 각 협정에 해당하는 협정관세율은 시행령 별표로, 원산지결정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각 원산지증명서서식은 시행규칙 별지로 포함시킴

- 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통관절차, 원산지조사,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처벌 등을 규정함

〈표 II-5〉 FTA 관세특례법상 원산지 관련 규정

주요내용	법	령	시행규칙
원산지 결정기준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제12조(원산지결정의 기준) 제13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사전심사	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15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제19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제19조의2(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20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제21조(사전심사) 제22조(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제23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 유예신청)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제11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 방법)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제14조(수출물품의 원산지로류 수정 통보기간) 제15조(수입물품의 원산지로류 수정 신고기간) 제16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제16조의2(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심사물품)
원산지 조사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3조의2(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제14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제15조(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5조의2(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 통지 등) 제15조의7(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 등) 제16조(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연기신청) 제18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17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제18조(서면조사방법) 제19조(현지조사) 제20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 통지기간) 제24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 기간)
처벌	제22조(벌칙) 제23조(양벌규정) 제24조(과태료)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자료: 저자 작성

- 원산지결정기준의 원칙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등 실질적 변경기준을 채택하고, 각 협정별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은 이 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
 - 싱가포르, EFTA, 아세안회원국, 인도, 칠레, EU, 페루, 미합중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시행규칙 별표 4 내지 별표 15에 포함

-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법,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에 따른 수정통보, 보관 및 제출기간 등 원산지증명 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발급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각 협정에 따라 스스로 원산지판정을 수행하고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법이 있음
 - 원산지증빙서류는 원산지증명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계약서 등 법정서류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법정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함.

-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 등이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미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사전심사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대상, 신청방법, 결정기한, 이의제기절차 등을 「FTA 관세특례법」에 담고 있음
 -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대상은 당해 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함
 - 사전심사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에 대해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게

나, 제약상대국으로부터 이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원산지 조사방법은 직접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는 직접검증과 제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간접검증 방법으로 나뉘는데, 이는 각 FTA별로 달리 함

- 「FTA 관세특례법」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작성하거나 발급한 경우,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협정과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벌칙으로는 벌금, 위반행위자와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과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Ⅲ. 주요국의 원산지 관련 법령

1. 일본

가.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

- 일본의 원산지 관련 법령은 크게 수출입통관단계의 통상법과 국내 유통 및 판매단계에서 주로 원산지표시 등을 규제하는 경쟁법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¹⁷⁾
 - 통상법 분야: 「관세법」, 「수출입거래법」, 「외환관리법」, 「상공회의소법」, 「관세장정조치법」, 「경제연계협정에 의거한 특정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經濟連携協定に基づく特定原産地証明書の発給等に関する法律, 「EPA 원산지 증명법」) 등
 - 경쟁법 분야: 「부당 경쟁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경표법」), 「농림물자 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農林物資の規格化及び品質表示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JAS(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 일본에서 통관단계의 원산지제도는 수입과 수출, 특혜와 비특혜분야로 나누어 별개의 법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다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국내 판매단계의 원산지 관련 법령은 모두 비특혜분야에 속함
 - 일본의 원산지규정상 특혜원산지규정은 적용을 받는 경우에만 필요하지만, 비특혜 원산지는 WTO 협정세율이 적용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기본적으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때에 적용됨¹⁸⁾

17) 박광서 외 5인(2014), p.89.

18) 도쿄 세관업무부 총괄 원산지 조사관, 「EPA 원산지규정 설명서」, 2015.1., p.1.

○ GSP세율은 기타 특혜세율, WTO 세율은 비특혜 협정세율의 개념이었지만, 2002년 11월 일-싱가포르 EPA가 발효와 함께 적용되기 시작한 EPA세율은 협정세율이자 특혜세율의 개념에 속함¹⁹⁾

〈표 Ⅲ-1〉 일본의 원산지 증명서 구분

구분	내용	근거법령
일반 원산지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 증명서 발급 요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국의 법규에 따름 계약과 신용장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 절차 간소화에 관한 국제협약 (제네바 협약/1923년 11월 3일 서명) 원산지 인정 기준: 관세법 기본 통달 (68-3-5)
GSP용 원산지증명서 (Form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 도상국이 공여를 희망하고 선진 13 개국과 지역이 그 공여를 적당하다고 인정한 일반 특혜 관세 적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cision of the GATT contracting parties of 28 November 1979, entitled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관세잠정조치법: 특혜 관세
특정 원산지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 당사국의 수입 신고에 의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EPA

자료: 일본 JETRO(http://www.jetro.go.jp/ext_images/theme/wto-fta/epa/pdf/japan_epa_rules_02.pdf)

1) 특혜 원산지 관련

□ 일본에서는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대한 GSP 관련 원산지규정을 관세잠정조치법으로 운영해왔음

○ 1971년부터 GSP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10년마다 제도를 갱신하고 있음.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세율에 있어 특별한 편익을 받는 것을 희망하는 국가 중에 해당편익을 받는 것이 적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함. 1980년부터 최빈국에 대한 특별우대조치를 도입하여 UN이 지정한 48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수량에 제한 없이 무관세를 적용함²⁰⁾

19) 도쿄 세관업무부 총괄 원산지 조사관, 「EPA 원산지규정 설명서」, 2015.1., p.1.

20) 조미진·김영귀·박지현·강준하,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연구보고서 11-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p.75.

- 양자간 무역협정으로는 2002년부터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투자와 각 분야에서의 협력 등 다양한 경제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경제연대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²¹⁾을 확대해옴
 - 2015년 6월 현재 싱가포르, 멕시코 등 14개의 EPA가 발효되어 있음²²⁾
 - 싱가포르 EPA(2002년 11월 발효, 2007년 9월 개정 의정서 발효), 멕시코 EPA(2005년 4월 발효, 2007년 4월 추가 의정서 발효, 2012년 4월 개정 의정서 발효), 말레이시아 EPA(2006년 7월 발효), 칠레 EPA(2007년 9월 발효), 타이 EPA(2007년 11월 발효), 인도네시아 EPA(2008년 7월 발효), 브루나이 EPA(2008년 7월 발효), ASEAN EPA(2008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효), 필리핀 EPA(2008년 12월 발효), 스위스 EPA(2009년 9월 발효), 베트남 EPA(2009년 10월 발효), 인도 EPA(2011년 8월 발효), 페루 EPA(2012년 3월 발효), 호주 EPA(2015년 1월 발효)

- EPA 적용대상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2004년 「EPA 원산지 증명법」을 제정하여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일본은 EPA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달리 별도의 단일한 이행법을 두지 않고, 여러 개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²³⁾
 - 「관세율 및 이의 적용절차」는 조약을 직접 적용(「관세법」 제3조 단서)하고,
 - EPA 국가에 대한 긴급관세 및 관세할당에 대하여는 「관세잠정조치법」에서 규정(제7조의8, 제8조의6)하고 있으며,
 - EPA 체약상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검증에 관하여는 경제산업성 소관의 「EPA 원산지 증명법」을 적용함

21) FTA: 특정 국가 또는 지역 사이에서 물품의 관세 및 서비스 무역 장벽 등을 삭감·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

EPA: 무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 사람의 이동 지적재산권 보호와 경쟁 정책의 규칙 만들기,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요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 관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협정

22) 일본 외무성(<http://www.mofa.go.jp/mofaj/gaiko/fta/index.html>, 2015. 6. 15. 조회)

23) 주일대한민국대사관·도쿄aT센터·KOTRA토쿄무역관(2012), p.116.

2) 비특혜원산지 관련

- 일본에서는 통관단계에서 각 법령에서 정한 원산지표시대상품품의 허위표시나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를 주로 규제하고 있음
 - 허위표시란 원산지 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함
 - 오인유발표시란 명백하게 허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 또는 객관적으로 보아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하도록 표시된 경우

- 비특혜원산지 관련규정은 「관세법」에서 원산지 허위·오인표시 물품의 수입을 불허하고 이들에 대한 시정조치 등 기본 원칙을 정하고, 허위표시 수출 규제를 「수출입거래법」에, 오인표시 수출규제는 「외국환관리법」에,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상공회의소법」에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에서는 원산지 허위·오인표시의 정정, 말소 또는 반송 및 유치 후 매각처리, 허위신고와 증명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하위규정인 「관세관계기본통달」에서 원산지결정기준, 규제대상 허위·오인표시, 시정조치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
 - 「수출입거래법」에서는 허위표시수출을 불공정행위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규정
 - 「외국환관리법」은 오인표시 수출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형사처벌
 - 「상공회의소법」은 「관세관계기본통달」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준용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절차를 규정

- 수입통관 단계를 거친 물품의 국내 유통 및 판매단계에서는 대상품목과 규제내용별로 각 소관기관에서 원산지, 품질 등을 규제하고 있음
 - 소비자청,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총무성 등에서 영양식품, 농림수산물, 주류, 가정용품, 섬유제품 등 주요 대상품목별로 여러 법령에 원산지, 품질 등의 표시방법과 규제방법을 규정함

- 이 가운데 비특혜원산지와 관련된 주된 법령으로는 「경표법」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품질, 규격 등의 부당한 표시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하며, 「JAS법」에서 특정 수입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를 부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허위·오인표시자에 대한 민사책임을 규정함

- 「경표법」에서는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으로서 이 법에서 정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표시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를 외국으로 표시하는 등의 부당한 원산지표시를 규제함
 - 「경표법」은 상품 및 역무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표시를 하여 소비자의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은 없고, 품목별 또는 분야별 부당표시 등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있고, 민간부문의 자율적 규제를 위한 공정경쟁규약에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정함

- 「JAS법」에서는 농림수산물 또는 소비자청고시에서 정한 품질표시 대상물품을 규정하고, 품질표시내용, 기준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기준을 어긴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
 - 농림수산물자의 규격화를 통한 생산 및 물류 원활화를 도모하고, 품질표시의 적정화를 통한 소비자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규제대상물품을 정하여 농림규격기준을 통과한 물품에 대한 인증과 신선식품, 가공식품, 유전자변형식품 등 품질표시 기준을 관리함
 - 농림축수산물의 원산지, 가공식품의 원산지 등 표시내용과 표시기준, 표시방법과 위반 시 제재를 규정함

〈표 Ⅲ-2〉 일본의 원산지 관련 법령

구분		국제법	국내법
특혜 분야	EPA 특혜	EPA(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타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ASEAN, 필리핀, 스위스, 베트남, 인도, 페루, 호주)	수입) 관세율 및 적용절차: EPA 직접 적용 EPA 적용대상물품긴급관세, 관세할당 : 관세잠정조치법 수출) EPA 증명법
	일반 특혜	GSP	관세잠정조치법
비특혜분야		WTO 통일원산지규정	수입) 관세법, 경표법, JAS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수출) 허위표시: 수출입거래법, 오인표시: 외국환관리법 원산지증명서 발급: 상공회의소법
특혜/비특혜		WCO 개정교토협약(부속서 K)	관세법

자료: 저자 작성

나. 원산지규정 체계

- 아래에서는 각 원산지 법령상 규정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법령인 「관세법」, 「관세 잠정조치법」, 「EPA 원산지증명법」 등을 살펴보고자 함

1) 관세법

- 「관세법」에는 원산지와 관련하여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화물에 대한 규제와 특혜 관세의 적용을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관계기본통달」에서 정함
 - ‘통달(通達)’은 상급 기관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하급기관에서 발령하는 구체적인 지시로서, 한국의 훈령 또는 지침에 해당함. 행정기관 내부규칙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된 사항을 정할 수 없으나, 행정기관의 판단기준이 되므로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²⁴⁾

-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되어 있거나 오인표시되어 있는 화물 및 우편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되, 지정된 기한 내에 허위 또는 오인표시된 원산지를 정정하지 않는 경우 유치할 수 있음²⁵⁾
- 법 제68조에 의한 관세에 관한 조약의 특별규정에 의한 편익을 적용받는 경우, EPA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과 「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특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제품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²⁶⁾
 - 관세에 관한 조약의 특별규정에 의한 편익관세나 EP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기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음²⁷⁾
- 「관세법」에는 특례신고화물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 등 원산지인정기준(영 제4조의2 제4항, 규칙 제1조의 5, 6 및 관세관계기본통달 68-3-5)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일반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적용함²⁸⁾
 - 완전생산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둘 이상의 국가에서 당해 물품의 생산이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인 변경과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는 공정이 이루어진 최종 국가를 원산지로 함
 -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을 준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

24) 주일대한민국대사관·도쿄aT센터·KOTRA토쿄무역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11, p.24

25) 「관세법」 제71조(원산지 허위표시 등 화물의 수입), 제78조(원산지 허위표시 등 우편물의 수입), 제87조(원산지 허위표시 등 화물의 유치)

26)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등)

27) (관세법관계기본통달 67-3-4(수입신고서의 첨부서류), 68-3-7(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원산지 인증 방법), 68-3-8(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인증), 68-3-9(원산지 증명서의 취급 등))

28) 도쿄 상공회의소 인증센터, Business Certificate News, 2015. 2. 16. 조회(http://www.tokyo-cci.or.jp/shomei_center/topics/pdf/20150216_gensanchi_kizyun.pdf)

- 「관세법」 제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에 관하여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율, 원산지, 과세표준 등에 관하여 미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사전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EPA, GSP 등에 관한 사전교시도 이 법 및 관세관계기본통달에 따라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관세법」에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을 관세를 면제받은 경우 등 원산지 허위신고, 증명 등에 따른 관세포탈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법 제110조, 제113조의2)
 - 관세를 면하거나 관세 환급을 받은 자 및 그에 준하는 미수범 및 예비범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관세잠정조치법

-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세의 편익 혜택을 제공하는 특혜수혜국가과 특별특혜수익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잠정조치법」에 근거하여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함
 - 일본의 GSP는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그 도입이 합의된 개발도상국의 수출 소득의 증대,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화물에 대해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특혜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 GSP 수혜국 및 지역, 특혜관세 대상품목, 특혜세율 등을 규정
- 특혜공여국 및 지역과 특혜관세 배제물품을 규정(영 제25조)하고,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을 적용함
 - 실질적인 변경 또는 가공이란 완제품의 품목번호와 원재료의 품목번호가 다른 것으로 건조, 냉동, 염수 등의 단순가공공정을 제외하며 직접운송원칙이 적용됨(영 제26조, 규칙 제9조, 규칙 제31조)
- GSP 등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특혜수혜국이 발급한 일반특혜제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의 세관 또는 권한을 가진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GSP 적용 원산지증명서(GSP Form A)를 제출하여야 함

-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하나, 재해 등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입 허가 전에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원산지에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자의 신고에 따라 발급된 것이어야 함
- 한편 「관세잠정조치법」은 EPA에 의한 관세할당과 할당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의 근거가 됨(제8조의6)

3) EPA 증명법²⁹⁾

- EP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원활하게 하여 수출무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EPA 체약상대국으로 수출되는 특정 물품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제반 절차를 규정함
 - 특정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 발급절차,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 원산지증명서의 변경에 따른 수정 통보, 원산지 검증, 위반 시 처벌 등 EPA 체약상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EPA 원산지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하는 특정원산지증명서는 발급주체에 따라 경제산업성에서 지정한 일본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것과 당해 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여 발급하는 방식이 있음
-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제1종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제품서약서 등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

29) 법령링크: http://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ja&u=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3FIDX_OPT%3D1%26H_NAME%3D%25C0%258D%25CF%258F%25E3%2582%25CC%2598A%258Cg%2582%25CC%258B%25AD%2589%25BB%26H_NAME_YOMI%3D%2582%25A0%26H_NO_GENGO%3DH%26H_NO_YEAR%3D%26H_NO_TYPE%3D2%26H_NO_NO%3D%26H_FILE_NAME%3DH16HO143%26H_RYAKU%3D1%26H_CTG%3D1%26H_YOMI_GUN%3D1%26H_CTG_GUN%3D1&prev=search

-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2종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경제산업성의 인증 요건을 충족한 인증수출자만이 발급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인증의 효력이 유지됨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사실관계 즉 원산지가 변경되었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및 기초자료에 변경이 생겨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생긴 경우 이를 법정 기한 내에 증명서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또한 원산지증명서 또는 제반서류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하거나 원산지증명서의 제반 변경사항에 대해 통보하지 않은 경우 등 EAP 증명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별도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30만엔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양벌규정이 적용됨
 - 특혜적용을 목적으로 특정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한 경우 형법상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다만, EPA에 의한 원산지인정기준은 별도로 관세법령에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협정의 부속서에 기재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야 함³⁰⁾
 - 「관세법관계기본통달」 제6장(통관) 제5절(경제연계협정(EPA)에 따른 수입통관)에 원산지결정기준, EP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 68-5-2(EPA 원산지물품의 인정기준) 각 EPA에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따르도록 준용규정을 두고, 일부 협정에서는 품목별 규칙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을 명시
 - － 68-5-4(경제 연계 협정의 품목별 규칙의 취급) 관세분류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 산정방식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³¹⁾

30) JETRO, 무역·투자상담 Q&A, (<https://www.jetro.go.jp/world/qa/04A-000973.html>)

31) <http://www.customs.go.jp/kaisei/zeikantsutatsu/kihon/TU-S47k0100-s06-05-06.pdf>

〈표 Ⅲ-3〉 일본 원산지 관련 주요 법령의 원산지규정 분석

구분		EPA 특혜관세	기타 특혜	비특혜
원산지표시		(수입) 관세법, 경표법, JAS법 (수출) 수출입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원산지결정기준		EPA	관세잠정조치법	관세법
원산지증명서 제출 (수입) 및 발급(수출)		(수입) 관세법 (수출) EPA 원산지증명법	관세잠정조치법	상공회의소법
검증/조사		EPA 원산지증명법	관세법	관세법
사전심사		관세법	관세법	관세법
벌칙	증명 및 서류보관	EPA 원산지증명법	관세법	(수입) 관세법 (수출) 외국환관리법 수출입거래법 등

자료: 김한성 · 조미진 · 양주영(2009), p.138. 참고하여 작성

2. 호주

- 호주의 관세법 체제는 「관세법」(Customs Act 1901)과 「관세율법」(Customs Tariff Act 1995)으로 운영되는데, 비특혜원산지와 특혜원산지규정을 모두 「관세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되 FTA 원산지절차는 협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³²⁾
 - 다만,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기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령에서 대상과 표기방법을 정하여 규제함

가. 비특혜

- 호주에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기(labeling)에 관한 주된 법령은 「무역표기법」(The Commerce (Trade Descriptions) Act 1905)으로, 표기대상물품을 지정하고 법정 표기방법 등 제반 의무를 규제함

32) 김석오 · 정재완(2010), pp.66-67.

- 「무역표기규정」(Commerce (Imports) Regulations 1940)에서 의약품, 비료, 종자, 식물, 의류, 보석류, 도자기, 신발류 등 특정물품을 무역표기대상으로 지정하고(Part II 7. Additional prohibition of certain imports), 제8조에 부착위치, 라벨의 내용 등 표기방법을 규정
 - 관세청 고시 2006/39(Commerce Marking on Imported Goods)에 품목별 원산지 표기요건을 자세히 규정함
- 호주 관세청(ACBPS)에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기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주관하고 각 소관부처에서는 국내판매단계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표기 등 각종 인증절차를 관리함
- 관세청 관보(Gazette)와 각 해당 소관부처별 법령에서 규제함
 - 식음료는 식약처(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에서, 의약품 및 의료용품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와 의약품은 호주연방의약품관리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에서, 의류 및 신발류는 소비자 공정거래협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에서, 농산물 및 화학물질은 농림수산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National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Scheme)에서 관리함
 - 의약품을 예로 들면, 수입물품 및 국내판매용 물품에 대한 규제는 「The Therapeutic Goods Act 1989」에 따름(ACN 2014/49)
- 무역표시(trade description)는 해당 물품이 생산, 감별, 포장 또는 준비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나 당사자에 관하여 기술하는 것으로, 이들 법령에 따라 무역표시가 필요한 특정물품이 해당 법규에 따라 표시되지 않은 경우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현재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특정한 표시요건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 무역표기를 하지 않은 수입물품 또는 부정표시(false trade description) 즉, 허위(incorrect)로 표시하거나 오인을 유발(misleading)하는 표시가 된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함

- 사이즈, 중량, 수량, 원산지, 생산자, 성분, 무역표기, 상표권 등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과장되거나 몰각 등의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것을 포함
- 원산지표시대상품품은 수출입을 하는 때에 세관의 검사를 거쳐야 하고, 수출하는 경우에는 선적하기 전에 세관에 신고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됨
- 원산지 부정표시물품은 관세청에서 압수 또는 몰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정정 등의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여 수출입 전에 관계 법령에 따른 표기를 하여야 통관이 가능함
 - 이를 위반한 수출입물품에 대한 벌금은 1만호주달러가 부과되며, 또한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세법」 제5AA조에 의거하여 형법 제2장이 적용됨
- 호주에서는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비특혜 목적의 원산지확인을 위해 원산지 판정은 필요로 하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음³³⁾
- 따라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 및 소비자거래법」,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³⁴⁾에 국내산으로 판정하기 위한 위한 원산지결정기준 조항은 두고 있지만³⁵⁾,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또는 원산지확인 등의 절차를 국내법에 규정하지는 않음
 - Part 5-3(Country of Origin Representation)에 따라 실질적 변형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부가가치기준 50%를 기준으로 함³⁶⁾

33) 호주 외무성, <http://dfat.gov.au/trade/topics/Pages/certificates-of-origin.aspx>

34) https://www.comlaw.gov.au/Details/C2015C00019/Html/Volume_3#_Toc409082171

35) 호주 관세청, http://www.customs.gov.au/webdata/resources/files/Fact_Sheet_Medicines_June_2013.pdf

36) 무역거래법, 「Trade Practices Act 1974」, s65AE, Division 1AA(Country of origin representation s)에 근거규정이 있었으나, 2010년에 폐지되어 동법으로 대체됨, https://www.comlaw.gov.au/Details/C2010C00623/Html/Volume_1#param406

나. 특혜

- 호주에서 일방적인 호혜적 성격의 특혜관세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Developing Country Preferential Rates)와 태평양제도 포럼(Forum Islands (Including Fiji))에 대한 일반특혜관세가 있음
 - 2003년 7월부터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방글라데시 등 49개국의 최빈국(Lest Developed Countries)과 동티모르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함

- 호혜대상국과 특혜세율은 「관세율법」에 규정하고, 특혜공여국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관세법」에 규정함
 - 산 동물 등을 제외하고 최종공정이 수행된 국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Part VIII Division 1A(Rules of origin of preference claim goods)함³⁷⁾
 - 부가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가공비, 부산물 등의 공제 또는 판공비 등을 산정하는 방법을 상세히 규정함

- FTA를 제외한 무역협정에 의한 특혜관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호주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³⁸⁾

- 한편, 호주가 체결한 쌍무적 성격의 상호무역협정은 FTA가 있으며, 2003년 싱가포르와의 FTA를 시작으로 2015년 6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9개의 FTA가 발효된 상태임
 - 싱가포르(2003년 발효), 미국(2005년 발효), 태국(2005년), 뉴질랜드 경제적 동반자협정(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1983년 발효되어 협정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ASEAN-호주-뉴질랜드 FTA(2009년 체결,

37) Australian Customs Notice No.2003/48, (http://www.customs.gov.au/webdata/resources/notices/ACN_03412.pdf)

38) 호주 관세청, ICS, <http://www.customs.gov.au/webdata/resources/files/Integrated-Cargo-System-claiming-preferential-tariff-rates.pdf>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순차적 발효), 칠레(2009년 발효), 말레이시아(2012년 체결, 2013년 발효), 우리나라(2014년 체결 및 발효), 일본(2014년 체결, 2015년 발효)

- 호주에서는 FTA가 발효되면 「관세법」에는 일반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을, 「관세율법」에는 관세양허율표를 삽입(insert)하여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형태로 이행법률을 운영하고 있음
 - 예를 들어, ASEAN-호주-뉴질랜드 FTA가 발효되면, 「Customs Amendment (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2009」, 「Customs Tariff Amendment (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2009」으로 「관세법」과 「관세율법」의 개정이 이루어짐
 - 「관세법」 Part VIII (The duties)에 FTA별로 Division³⁹⁾을 두어 발효된 순차로 규정됨
 - 「관세법」에는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직접운송원칙, 불인정공정, 미소기준, 부분품, 포장용기, 탁송품 등의 규정을 두며,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의 조항을 마련하기도 함
 - 관세청 고시에 해당 FTA와 국내법을 준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제출, 소급적용 시 환급, 특혜관세 적용 신청, 원산지 사전심사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기술함

- 또한 호주에서도 미국과 같이 각 FTA별로 「관세법」에 의거하여 「Customs (Rules of Origin) Regulations」(「FTA 이행규정」)을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일반 원산지결정기준과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만을 규정함
 - 한-호주 FTA를 예를 들면 「관세법」의 하위규정인 「Customs(Korean Rules of Origin) Regulation 2014」의 「FTA 이행규정」이 시행되며, 총 13개 조항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인 'Schedule 1'으로 구성

39) Division 1B: 싱가포르, 1C: 미국, 1D: 태국, 1E: 뉴질랜드, 1F: 칠레, 1G: 아세안호주뉴질랜드, 1H: 말레이시아, 1J: 우리나라, 1K: 일본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집적법, 가격 등의 원산지결정기준 조항들과 수출자와 생산자의 서류보관의무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음⁴⁰⁾
 - Part 2(Tariff change requirement), Part 3(Regional Value Content Requirement), Part 4(Determination of Value), Part 5(Record keeping obligations)

- 그리고 FTA 협정상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산지증명 및 검증 등 원산지 절차에 관한 부분은 FTA 조약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⁴¹⁾
 - 제3장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절차(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가운데 서류보관의무, 벌칙, 재심 등을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특혜관세 사후신청, 검증 등 3.15(Certificate of Origin) 내지 3.26(Non-Party Invoices)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에 관한 절차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국내법에 수용하지 않음
 - 제4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Customs Administration and Trade Facilitation) 부분은 국내법에 규정하지 않음

- FTA 특혜관세 적용 목적의 원산지증명서는 호주상공회의소⁴²⁾(the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나 호주산업협회⁴³⁾(the Australian Industry Group, AiGroup)에서 기관발급하거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호주에서는 특혜목적의 원산지증명서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법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다만, 호주 외무성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원산지증명서제도를 운영함⁴⁴⁾

40) 한-호주 FTA 원산지규정: <https://www.comlaw.gov.au/Details/F2014L01719>, 미국 <https://www.comlaw.gov.au/Details/F2012C00384>

41) 호주 관세청, (<http://www.customs.gov.au/webdata/resources/files/kafta-comparison-table.pdf>)

42) <http://www.acci.asn.au/>

43) <http://www.aigroup.com.au/trade/certificateoforigin>

44) <http://dfat.gov.au/trade/topics/Pages/certificates-of-origin.aspx>

- 또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항상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FTA 협정상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또는 발급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FTA 체결국과는 원산지물품임을 서류로 입증하는 것을 통관요건으로 함⁴⁵⁾
- 예를 들어, 원산지증명서 관련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호주-미국 FTA’나 ‘호주-뉴질랜드 경제적동반자협정’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도 수출자 또는 당사자의 신고(declaration)의무를 규정한 ‘호주-칠레 FTA’ 적용물품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발급한 신고서나 증명서 등으로 원산지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표 Ⅲ-4〉 호주 원산지 관련 주요 법령의 원산지규정 분석

구분	FTA 특혜관세	기타 특혜	비특혜
원산지표시 (대상, 방법)	관세법, 무역표기법		
원산지결정기준	관세법	관세법	경쟁 및 소비자거래법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출) 및 제출(수입)	(수입) 관세법 (수출) FTA	규정없음	규정없음
검증/조사	FTA	관세법	관세법
사전심사	FTA	규정없음	
벌칙	관세법	관세법	관세법, 무역표기법

자료: 김한성 · 조미진 · 양주영(2009), p.138. 참고하여 작성

45) 호주 관세청, ICS-특혜관세적용신청, <http://www.customs.gov.au/webdata/resources/files/Integrated-Cargo-System-claiming-preferential-tariff-rates.pdf>

3. 미국

- 미국의 원산지규정은 특혜원산지 관련 규정과 비특혜원산지 관련 규정을 「관세법」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음
- FTA와 같이 특정 국가와의 양자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규정은 이행법률을 제정하고 각 개별 규정을 국내법령에 재규정하는 방식을 취함

가. 비특혜

-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의 핵심은 ‘실질적 변형기준’이며, 기본적으로 미국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 발전해 옴
 - 대표적인 판례로는 Ahheuser-Busch사 판결(연방대법원, 1907. 1. 6.), Belcrest Linens사 판결(연방항소법원, 1984), National Justice 연합사건(1986), Superior Wire사 사건(미국국제무역법원, 1987) 등이 있음⁴⁶⁾
- 미국의 비특혜원산지규정은 「관세법」, 「덤핑방지법」, 1994년 「GATT 이행법」, 「연방거래위원회규칙」, 「미국자동차표시법」(America Automobile Labeling Act), 「미국산 우선 구매법」(Buy American Act) 등에 두고 있음⁴⁷⁾
- 「미국자동차표시법」은 1994년 10월 1일 이후 제조된 차량은 자동차 조립국가, 미국산 부품의 비율, 자동차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원산지표시 의무를 명시함⁴⁸⁾
- 「미국산 우선 구매법」에 의하면 정부조달 목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 중 미국산 부품이 50%를 넘는 경우 원산지를 미국으로 표시함⁴⁹⁾

46) 박광서 외, 『원산지제도 관세법 일원화 및 합리적인 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pp.83-84.

47) 박광서 외(2014), p.74.

48) 49 U.S.C §32304

- 미국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은 6개의 절(subtitle)로 제1202조부터 제1683g조까지 총 25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제2절의 제1304조(19 U.S.C. §1304)에 원산지 관련 규정을 명시함
 - 국내생산물품 및 수출품의 미국 원산지에 대한 규제는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의 연방거래위원회법(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제5부 ‘불공정한 사기 행위 및 관행의 금지’에 명시함⁵⁰⁾

- 미국 1930년 「관세법」의 제1304조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s 19, 19 CFR) Part 134는 원산지표시 방법, 원산지 증명과 검증 등 관세 행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⁵¹⁾

- 미국 1930년 「관세법」의 제1304조 a항에 원산지 표시대상, 표시방법 및 표시의무의 면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표시되어야 함
 -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물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legibly), 지워지지 않고(indelibly), 영구적인 방법으로(permanently),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의 원산지국의 영어지명이 표시되어야 함
 - 재무부 장관은 물리적으로 당해 물품에 원산지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원산지표시를 함으로써 당해 물품이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나, 허위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처벌을 미국 1930 「관세법」 제1592조에 규정함
 - 허위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압류 또는 벌금형에 처함

49) 15 U.S.C. §10a~10c

50) 15 U.S.C. §45

51) 김한성 외, 『무역활성화를 위한 특혜원산지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p.67.

〈표 Ⅲ-5〉 미국 원산지표시제도

근거법률	관세법	- 관세법 제1304조 - 관세법 시행규칙 제134조
집행기관	관세청	
원산지판정기준 (실질변형기준)	- 섬유류: 품목별 기준 - 기타품목: 관례법 예외) NAFTA산: 세번변경기준)	- 관세법 시행규칙 제102조
표시대상물품	전품목	- 관세법 시행규칙 제134.11조
표시의무의 면제	광범위하게 인정	- 관세법 시행규칙 제134.32조
표시방법	일부지정	일부인정 - 관세법 시행규칙 제134.43조 (a), (b), (c), (d)
	Assembled in 국명표시	인정 - 관세법 시행규칙 제134.43조 (e)

자료: 박광서 외(2014), p.87. 참고하여 작성

- 「관세법 시행규칙」 제134조에서 원산지 표시대상, 방법 및 표시의무 면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 「관세법」에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법」 제1304조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또는 그 포장용기)을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표시방법과 표시위치를 「관세법 시행규칙」 제134.41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 「관세법 시행규칙」 제134.41조에는 일반적 표시방법, 제134.42조에는 특별한 표시방법을, 제134.3조에는 특정물품에 대한 별도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특수한 표시방법은 제134.43조에서 정한 품목과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품목에 한하여 적용함
- 「관세법 시행규칙」 제134.32조의 원산지 표시의무의 면제는 「관세법」 제1304조 a항 3호의 규정과 동일함

- 다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134.33조에서는 “J-List exception”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원산지표시의무에 예외를 둠
 - J-List에서는 예술작품, 담배, 화학물질, 농수산물 등을 포함한 100여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의무를 면제함
 - J-List에 해당하는 품목일지라도 이들 품목들이 용기에 담겨져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최종구매자에게 도달하는 제일 바깥쪽의 포장용기에 그 내용물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함⁵²⁾

- 「관세법 시행규칙」 제134.34조에 재포장물품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재포장하는 용기에 내용물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 수입자의 비용부담으로 세관원에게 수입물품이 재포장될 용기상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경우 또는 증명서와 견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세관장의 재량으로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음⁵³⁾

- 「관세법」상 비특혜원산지 결정기준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102.0~102.21조에 명시함

- 「관세법」상 섬유류의 원산지기준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102.21조에 따라 비특혜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나, 품목별기준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102.20조에 의해 NAFTA 국가의 수입물품에 한하여 적용됨⁵⁴⁾

- 섬유 및 의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완전획득(또는 생산)된 물품과 당해국산 원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및 외국산 원재료가 포함된 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별 기준을 충족하면 그 물품의 생산국을 원산지로 결정하며, 이에 의해 원산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단일 원재료의 원산지, 대체가능물품의 경우 재고관리기법에 의하여 결정된 원산지에 원산지를 부여함⁵⁵⁾

52) 19 CFR§134.33

53) 19 CFR§134.34

54) 채형복, 『원산지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2014, p.44.

55) 채형복(2014), p.45.

- 그 밖에 세트물품, 혼합물, 복합물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특성 부여에 동등하게 기여한 각 원재료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결정함⁵⁶⁾
- 단순가공생산품과 단순조립생산품은 당해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데 동등하게 기여한 각 원재료 생산국가와 각 부분품 생산국가에 각각 원산지를 부여하고 이에 의해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 생산 수행국을 원산지로 인정함⁵⁷⁾
- 그 밖에 「관세법」은 대체가능물품 및 미소기준, 간접재료 및 불인정 공정과 개별품목 별 기준을 설정. 섬유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⁵⁸⁾에 따라 완전생산기준과 세 번변경 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함⁵⁹⁾
- 「관세법 시행규칙」 제134.51조에 물품 또는 포장용기 검사결과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되지 않았음이 밝혀진 경우 수입통관세관장은 이를 적절한 표시, 반송 또는 폐기를 통한 해결을 위하여 세관양식 4647을 통해 수입자에게 통지할 것을 명시함
- 「관세법 시행규칙」 제134.51조 b항에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은 물품이 반송, 폐기 또는 세관의 감독 하에 표시된 경우 수입된 물품의 구분은 수입통관세관장에 의해 결정됨을 명시함⁶⁰⁾
 - 「관세법 시행규칙」 제134.51조 c항에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표시, 반송 또는 폐기에 따르는 경비는 수입업자가 부담할 것을 명시함⁶¹⁾
- 「관세법 시행규칙」 제134.52조에 원산지표시 완료증명 방법과 절차를 명시함
 - 「관세법 시행규칙」 제134.52조 a항에 수입통관세관장은 세관양식 4647을 통해 요

56) 19 CFR§102.11(c)

57) 19 CFR§102.11(d)

58) 19 CFR§102.20

59) 채형복(2014), p.45.

60) 19 CFR§134.51

61) 19 CFR§134.51

구한 원산지표시 완료 여부를 수입자가 제출한 견본에 의해 확인할 수 있음을 명시함⁶²⁾

○ 「관세법 시행규칙」 제134.52조 b항에 원산지표시증명서류는 두 통을 원산지가 표시된 견본과 함께 수입통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명시함⁶³⁾

○ 「관세법 시행규칙」 제134.52조 e항에 수입통관세관장은 필요할 경우 원산지표시에 대한 물리적 감독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함⁶⁴⁾

□ 「관세법 시행규칙」 제134.4조에 원산지 정보를 은폐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에 고의적 제거, 손상 혹은 변경을 가하는 어떠한 경우에 대하여 \$5,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함⁶⁵⁾

□ 「관세법 시행규칙」 제174조에 원산지표시 관련 불복에 관한 적용 가능한 조항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⁶⁶⁾

□ 「관세법 시행규칙」 제177조에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

○ 미 관세청은 1989년부터 미국으로 수·출입될 물품에 대하여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확실한 정보나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 사전에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는 사전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사전심사서의 내용은 세관당국과 수입자 모두를 구속함⁶⁷⁾

62) 19 CFR§134.52

63) 19 CFR§134.52

64) 19 CFR§134.52

65) 19 CFR§134.4

66) 19 CFR§174

67) 이상엽·김미영·이민선,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비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p.37.

〈표 Ⅲ-6〉 미국의 비특혜 및 특혜 원산지 관련 법령근거

구분	국제법	국내법
특혜분야	미-이스라엘 FTA 미-캐나다 FTA, CUFTA 미-멕시코, NAFTA 미-요르단 FTA 미-칠레 FTA 미-싱가포르 FTA 미-호주 FTA 미-모로코 FTA CAFTA-DR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미-오만 FTA 미-페루 TPA 미-한국 FTA, KORUS FTA 미-콜롬비아 FTA 미-파나마 FTA	
	• 일반관세특혜제도(GSP) - General Note 4 (19 U.S.C.§1202) - 19 U.S.C.§2461 - 19 CFR§10.171	• 카리브해 연안국 특혜제도 - General Note 7(19 U.S.C.§1202) - 19 U.S.C.§2701 - 19 CFR§10.191 •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협정 - General Note 16(19 U.S.C.§1202) - 19 U.S.C.§3701 - 19 CFR§10.178a, 10.211 • 미속령 특혜제도
비특혜분야	• 1994년 GATT실시법	• 판례법 • 1930 관세법 제1304조의 원산지표시 - 19 U.S.C.§1304 - 19 CFR§Part 134 - 19 CFR§102.0 • 정부조달품 원산지표시 - 19 U.S.C.§2511 et seq. (19 CFR§177.21) • 섬유류와 섬유제품 원산지 표시 - 7 U.S.C.§1854 - 19 CFR§3592 - 19 CFR§12.130, 102.21 • 덤핑방지법 • 자동차라벨링법 • 미국산 우선구매법
특혜/비특혜	• NAFTA 및 이행법	

자료: 박광서 외(2014), p.75. 참고하여 작성

나. 특혜

- 미국의 특혜원산지규정은 크게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와 같은 일방적 특혜규정과 양자 간 협정에 의한 쌍방적 특혜규정으로 구분됨
- 일방적 특혜규정으로는 일반관세특혜제도(GSP), 카리브해 연안국 특혜제도,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협정(AGOA), 미속령 특혜제도 등이 있음
 - 일반관세특혜제도(GSP)상 원산지 관련 규정의 법적 근거는 General Note 4 (19 U.S.C.§1202), 19 U.S.C.§2461, 19 CFR§10.171에 있음⁶⁸⁾
 - 카리브해 연안국 특혜제도상 원산지 관련 규정의 법적 근거는 General Note 7 (19 U.S.C.§1202), 19 U.S.C.§2701, 19 CFR§10.191에 있음⁶⁹⁾
 -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협정상 원산지 관련 규정의 법적 근거는 General Note 16 (19 U.S.C.§1202), 19 U.S.C.§3701, 19 CFR§10.178a, 10.211에 있음⁷⁰⁾
- 쌍방적 특혜규정으로는 NAFTA와 여러 FTA협정상의 원산지규정이 있음
- 미국은 쌍방적 특혜규정인 FTA의 특혜원산지규정의 경우, 의회에서 별도의 이행법률을 제정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FTA가 체결될 때마다 필요한 이행법률(Implementation Act)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취함
 - 각 이행법률에서는 FTA협정의 국내법으로 편입을 위한 승인, 체결국과의 특혜관세, 원산지, 관세행정 등 관세조항을 규정함
 - 2015년 6월 현재 미국이 체결한 20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어 있음⁷¹⁾

68) 미국세관국경보호청(http://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icp026_3.pdf, 2015. 6. 24. 조회)

69) 미국세관국경보호청(http://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icp026_3.pdf, 2015. 6. 24. 조회)

70) 미국세관국경보호청(http://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icp026_3.pdf, 2015. 6. 24. 조회)

71) 미국무역대표부(<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 2015. 6. 19. 조회)

- 미-이스라엘 FTA(1985년 9월 발효)
- 미-캐나다 FTA, CUFTA(1989년 1월 발효)
- 미-멕시코, NAFTA(1994년 1월 발효)
- 미-요르단 FTA(2001년 12월 발효)
- 미-칠레 FTA(2004년 1월 발효)
- 미-싱가포르 FTA(2004년 1월 발효)
- 미-호주 FTA(2005년 1월 발효)
- 미-모로코 FTA(2006년 1월 발효)
- CAFTA-DR(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발효)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코스타리카

- 미-오만 FTA(2009년 1월 발효)
- 미-페루 TPA(2009년 2월 발효)
- 미-한국 FTA, KORUS FTA(2012년 3월 발효)
- 미-콜롬비아 FTA(2012년 5월 발효)
- 미-파나마 FTA(2012년 10월 발효)

〈표 Ⅲ-7〉 미국의 협정별 국내법 규정

체약상대국	연방 관세법	연방규정	HTS General Note
Israel	19 USC 2112 note	None	GN 8
NAFTA	19 USC 3301-3473	19 CFR 181 and Appendix 19 CFR 102	GN 12
JFTA(Jordan)	19 USC 2112 note	19 CFR 10,701-712 (subpart K)	GN 18
CFTA(Chile)	19 USC 3805 note	19 CFR 10,401-490 (subpart H)	GN 26
SFTA(Singapore)	19 USC 3805 note	19 CFR 10,501-570 (subpart I)(Interim)	GN 25
AFTA(Australia)	19 USC 3805 note	No Interim Regulations published to date	GN 28
Morocco	19 USC 3805 note	19 CFR 10,761-787 (subpart M)	GN 27

〈표 Ⅲ-7〉의 계속

체약상대국	연방 관세법	연방규정	HTS General Note
Bahrain	19 USC 3805 note	19 CFR 10.801-827 (subpart N)	GN 30
Oman	19 USC 3805 note	19 CFR 10.861-890 (subpart P)	GN 31
CAFTA-DR	19 USC 4001-4111	19 CFR 10.581-625 (subpart J)	GN 29
Peru	19 USC 3805 note	19 CFR 10.901-934 (subpart Q); 77 FR 64031, Oct, 18, 2012	GN 32
Korea	19 USC 3805 note	19 CFR 10.1001-1034 (subpart R); 77 FR 15943, Mar, 19, 2012 (Interim)	GN 33
Colombia	19 USC 3805 note	19 CFR 10.3001-3034 (subpart T); 77 FR 59064, Sept, 26, 2012 (Interim)	GN 34
Panama	19 USC 3805 note	None as of 2/20/13	GN 35

자료: 정재호 외, 『주요국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직접운송원칙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p.51.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행을 위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1993)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기존의 국내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세법령에 재규정하는 방식을 취함⁷²⁾

72) 김석오 · 정재완(2010), p.66.

〈표 Ⅲ-8〉 미국의 NAFTA 및 이행법

비특혜 원산지규정	특혜 원산지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FTA 및 이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 제311조 - 수입물품 원산지판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FR 102.0~102.21조 - 원산지표시관련 처분에 대한 재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FR 181.111~181.1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FTA 및 이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기준: 협정 Chapter 4 · 품목별기준: 협정부속서 401, 이행법 3332조, CFR 181.131조 및 부속서 - 원산지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 501~504조 · 이행규칙(CFR 181.11~181.23조) - 원산지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 505~507조 · 이행규칙(CFR 181.71~181.76조) - 허위증명에 대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 508조 · 이행규칙(CFR 181.81~181.82조) - 사전심사 및 불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 509~510조 · 이행규칙(CFR 181.91~181.102조)

자료: 박광서 외, 『원산지제도 관세법 일원화 및 합리적인 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p.75.

□ 한-미 FTA의 법적 근거는 미 「관세법 시행규칙」 제10.1001-1034조(subpart R)에 있으며 제10.1001-1002조에 일반조항을, 제10.1003-1009조에 수·출입 관련조항을, 제 10.1010-1012조에 수입 후 관세 환급 관련조항을, 제10.1013-1029조에 원산지관련 규정을, 제10.1030-1033조에 처벌조항을 명시함

〈표 Ⅲ-9〉 미국 관세법시행규칙상 한미FTA의 원산지 관련규정

조항	규정내용
19 CFR § 10.1013	정의
19 CFR § 10.1014	원산지결정
19 CFR § 10.1015	역내 포함 가치비율
19 CFR § 10.1016	상품의 가치
19 CFR § 10.1017	누적
19 CFR § 10.1018	최소허용수준
19 CFR § 10.1019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19 CFR § 10.1020	부속품, 예비부품 및 도구
19 CFR § 10.1021	상품의 세트
19 CFR § 10.1022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19 CFR § 10.1023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19 CFR § 10.1024	간접재료
19 CFR § 10.1025	통과 및 환적
19 CFR § 10.1026	특혜관세대우 신청에 대한 확인 및 검증
19 CFR § 10.1027	섬유 및 의류상품 원산지 확인을 위한 특별규칙
19 CFR § 10.1028	잘못된 원산지결정의 공지
19 CFR § 10.1029	잘못된 특혜관세대우의 재신청

자료: 미 관세청

4. EU

- EU의 원산지 관련 규정은 28개 EU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동관세법」(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과 「관세법 시행규칙」(Customs Code's Implementing Provisions,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2454/93)에서 규정함⁷³⁾

- 2016년 6월 1일부터는 EU 신관세법인 「Regulation (EU) No.952/2013」이 시행될 예정임
 -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Council Regulation (EEC) No.2913/92」는 2016년 6월 1일부로 폐지될 예정임⁷⁴⁾

- EU 신관세법에 명시된 원산지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⁷⁵⁾
 - 한 국가 또는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물품은 그 국가 또는 영역에서 원산지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함
 - 한 국가 또는 영역을 초과하여 제조된 물품은 최종의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 또는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함
 - 세관 규정에 따른 세관신고에서 원산지가 적시된 경우, 세관당국은 신고인에게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류는 무역의 긴급 상황에서 요청되는 경우, EU 차원에서 발행될 수 있음

73) 유럽연합집행위원회(http://ec.europa.eu/index_en.htm, 2015. 6. 20조회)

74) 유럽연합집행위원회(http://ec.europa.eu/index_en.htm, 2015. 6. 20조회)

75) 주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 「EU의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 개요」(2013), p.15.

〈표 III-10〉 EU의 원산지 관련 신관세법 조항

근거법령	비특혜분야	특혜분야
EU 관세법	59조: 적용범위 60조: 원산지의 취득 (완전생산기준, 실질변형기준) 61조: 원산지의 증명 62조: 권한의 위임 63조: 이행권한의 허여	64조: 특혜원산지 65조: 권한의 위임 66조: 이행권한의 허여
	67조: 위원회가 취한 조치(특정물품 원산지의 판정) 68조: 이행권한의 허여(제285조 4항에 따른 검사절차에서 이행법 채택)	

자료: 박광서 외, 『원산지제도 관세법 일원화 및 합리적인 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p.116.

- EU의 원산지규정 체계상 특이한 점은 특혜원산지 관련 규정과 비특혜원산지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모두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임
 - 「관세법」에서는 원산지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적용이나 시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
- 「EU 관세법」은 원산지판정기준과 원산지증명에 관한 규정만 두고, 원산지표시와 이에 따른 처벌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벌금에 대해서도 상품의 관세율에 의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
 -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시행됨
 - 각국은 국내법 이외에 파리조약 및 마드리드협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원산지표시 위반 혹은 허위 신고에 대한 벌금은 회원국의 관할 관세청에서 부과함
- 다만, 2013년 7월 11일부터 시행중인 화장품 수입 및 판매에 관한 「EU화장품법」(EU Regulation NO. 1223/2009)에 의해 화장품에 대하여만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음⁷⁶⁾

76) 박광서 외(2014), p.119.

〈표 Ⅲ-11〉 EU의 원산지 관련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조항

근거 법령	비특혜분야	특혜분야
EU 관세법	제22조: 적용대상분야 제23조: 완전생산기준 제24조: 실질변형기준 제26조: 원산지증명서류	제27조: 원산지인정 근거규정 (a) 쌍방특혜규정: 당해협정 (b) 일방특혜규정: 관세법 시행규칙
EU 관세법 시행규칙	제35~40조: 일반원산지판정기준 제41~46조: 특수원산지판정기준 제47~65조: 원산지증명 부속서 9: 원산지판정기준 통칙 부속서 10: 특정섬유류 원산지판정기준 부속서 11: 기타 특정물품 원산지판정기준 부속서 12: 수출원산지증명서 부속서 13: 수입농산물원산지증명서	제66~97조: 일반특혜관세(GSP) 제98~119조: 속령특혜 120~140조: 기타 일방적 특혜 부속서 14: 품목별 원산지판정기준 부속서 15: GSP 원산지판정기준 부속서 17: GSP 일반원산지증명서 부속서 19: 속령 원산지판정기준 부속서 20: 기타 특혜원산지판정기준 부속서 21: 속령, 기타 특혜 증명서 EUR 1 부속서 22: 속령, 기타 특혜 증명서 EUR 2

자료: 박광서 외, 『원산지제도 관세법 일원화 및 합리적인 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p.117.

가. 비특혜

- EU는 비특혜원산지를 「EU 관세법」 제22조~제26조(4개 조문)와 「EU 관세법 시행규칙」 제35조~제65조 및 부속서 9~13에서 규정함⁷⁷⁾
- EU의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공동관세율, 수량제한 및 상품의 수출입에 대하여 취해지는 기타 모든 조치의 통일적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⁷⁸⁾
- EU는 비특혜원산지의 판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함
- 「EU 관세법」 제23조에 제품이 한 국가 내에서 완전하게 생산되어 그 국가가 원산지가 되는 완전생산기준 판정 기준을 제시함

77) 박광서 외(2014), p.116.

78) 채형복, 『유럽연합(EU)의 원산지제도』,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6, p.6-7.

- 「EU 관세법」 제24조에 2개국 혹은 그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과정을 거친 상품은 실질적 변형 또는 가공이 최종적으로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제시함
 - 이러한 실질적 변형 또는 가공이 경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 새로운 제품이 생산되거나 혹은 그 제작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함⁷⁹⁾

- 「EU 관세법」 제25조에 원산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가공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 우회방지를 규정함
 - 우리나라는 우회방지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는 상황임

- 「EU 관세법 시행규칙」 제35조~제40조는 비특혜원산지규정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며, 두 가지 범주의 상품에 대하여 적용 예외를 둠
 - 섬유 및 편물제품(「EU 관세법 시행규칙」 제36조~제38조)
 - 「EU 관세법 시행규칙」 부속서 11에 명시된 13개 품목

- 「EU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EU의 원산지증명서는 EU 회원국가의 관련 정부기관이나 각 국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가받은 기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제품의 원산지가 EU 공동체임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함⁸⁰⁾

- 수입의 경우에도 「EU 관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해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나 국가에서 정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가받은 기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물품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건을 포함하고 명백하게 그 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함⁸¹⁾

79) 채형복, 『원산지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2014, p.60.

80) 김한성 외, 『국내기업의 한EU FTA활용 극대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p.55.

81) 김한성 외(2009), pp.55-56.

- 그러나 「EU 관세법 시행규칙」 제55조와 제56조에 의하면 특별비특혜 수입을 이용해 제3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농업 상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제3국가의 관련 정부기관에 의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함⁸²⁾
- EU의 사전심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EU 관세법」 제12조 및 「EU 관세법 시행규칙」 제2조(BTI)와 제5조 내지 제14조(BOI)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EU의 사전심사는 EU 관세법상 품목분류에 대한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 및 원산지에 대한 BOI(Binding Origin Information)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⁸³⁾

나. 특혜

- EU는 특혜원산지에 관한 규정을 「EU 관세법」 제27조(1개 조문)에서 다루고 있으며, 「EU 관세법 시행규칙」 제66조~제140조 및 부속서 14~22에서 구체적인 적용내용을 규정함
 - 「EU 관세법 시행규칙」 제66조~140조의 내용은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절차에 관한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 원산지 허위신고 또는 허위 표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⁸⁴⁾
- 「EU 관세법」은 특혜원산지의 원산지인정 근거만을 규정하며 실질적인 내용은 일반특혜규정의 경우 「EU 관세법 시행규칙」에, 쌍방특혜규정은 각 협정별로 구성하고 있음
- 따라서 EU의 특혜원산지 관련 규정 중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속령특혜 및 기타 일방특혜규정은 「EU 관세법 시행규칙」에, FTA와 같은 쌍방특혜규정은 당해 협정문에 그 규정을 명시함

82) 김한성 외(2009), p.56.

83) 이상엽 외(2014), p.91.

84) 김한성 외, 『국내기업의 한EU FTA활용 극대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p.35.

- 특혜원산지 증명에 있어서 일방적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EU 관세법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정에 의한 쌍방적 특혜관세 부여에 대하여는 해당 협정에서 규정하도록 함⁸⁵⁾
-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EU Regulation No. 978/2012에 의해 GSP제도하에서 176개 국가의 6,244개 품목에 특혜관세를 부여하던 것을 약 80개국으로 대폭 축소하는 ‘신일반특혜관세제도(GSP)’가 시행중에 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GSP 일반협정의 수혜대상국 축소, 지속가능한 개발 및 건전한 거버넌스를 위한 특별협정(GSP Plus)의 수혜 확대 및 조건 강화, 최빈국을 위한 특별협정(EBA) 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
- 「EU 관세법 시행규칙」 제78~92조에 GSP의 원산지증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⁸⁶⁾
- 「EU 관세법 시행규칙」 제81조 5항에 GSP의 원산지증명서인 certificate of origin Form A는 수혜국가의 관련 정부기관에서 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함⁸⁷⁾
- 「EU 관세법 시행규칙」 제105~117조에 속령 특혜원산지증명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GSP 원산지증명규정과 유사함⁸⁸⁾
 - 「EU 관세법 시행규칙」 제110조 1항에 따라 속령 특혜원산지의 movement certificate EUR.1은 수혜국가나 지역의 관세청이나 관련 정부기관에서 발행되어야 함
 - 원산지증명서를 일반물품과 우편물품으로 이원화 하고 있으며 개인에게 송부된 물품 또는 여행자 수화물 중 비상용 소액 물품에 대하여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음⁸⁹⁾

85) 김한성 외(2009), p.36.

86) 김한성 외(2009), p.37.

87) 김한성 외(2009), p.56.

88) 김한성 외(2009), p.38.

89) 김한성 외(2009), p.38.

- 「EU 관세법 시행규칙」 제127~136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및 마케도니아산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특혜원산지증명규칙을 규정하고 있음⁹⁰⁾
- 동 규정의 원산지증명서 서식, 유효기간, 비상업용 소액물품에 대한 증명서 제출 면제 등은 전술한 속령 특혜원산지제도와 동일함⁹¹⁾

- 양자 간의 협상을 통해 EU와 제3국가가 체결한 협정에 의한 특혜원산지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기관발급일 경우, 협정문에 명시된 기관에 의해 발급되어야 하는데, 주로 세관이나 관련 정부기관에 의해 발급됨⁹²⁾

- EU의 특혜원산지의 경우 통일된 표준규범인 Pan-Euro System을 확립하여 1997년 이후로 유럽과 체결한 모든 FTA에는 Pan-Euro System을 반영하여 통일성 및 일관성을 유지함
 - Pan-Euro System의 원산지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FTA협상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반영함
 - 우리나라와 체결한 한·EFTA FTA와 한·EU FTA의 특혜원산지규정에서도 일부 품목별 원산지판정기준을 제외하고 기본골격 및 주요내용 등은 Pan-Euro System을 반영하였음⁹³⁾
 - 2015년 6월 현재 EU가 체결한 31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음
 - EU-OCTs(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FTA(1971년 1월 1일 발효)
 - EU-스위스·리히텐슈타인 FTA(1973년 1월 1일 발효)
 - EU-아이슬란드 FTA(1973년 4월 1일 발효)
 - EU-노르웨이 FTA(1973년 7월 1일 발효)
 - EU-시리아 FTA(1977년 7월 1일 발효)
 - EU-안도라 관세동맹(1991년 7월 1일 발효)

90) 김한성 외(2009), p.39.

91) 김한성 외(2009), p.39.

92) 김한성 외(2009), p.57.

93) 박광서 외(2014), pp.116-117.

- EEA(European Economic Area)(1994년 1월 1일 발효)
- EU-터키 관세동맹(1996년 1월 1일 발효)
- EU-Faroe Islands FTA(1997년 1월 1일 발효)
- EU-Palestinian Authority FTA(1997년 7월 1일 발효)
- EU-튀니지 FTA(1998년 3월 1일 발효)
- EU-남아프리카공화국 FTA(2000년 1월 1일 발효)
- EU-모로코 FTA(2000년 3월 1일 발효)
- EU-이스라엘 FTA(2000년 6월 1일 발효)
- EU-멕시코 FTA(2000년 7월 1일 발효(상품)/2000년 10월 1일 발효(서비스))
- EU-마케도니아 FTA(2001년 6월 1일 발효(상품)/2004년 4월 1일 발효(서비스))
- EU-크로아티아 FTA(2002년 3월 1일 발효(상품)/2005년 2월 1일 발효(서비스))
- EU-산마리노 관세동맹(2002년 4월 1일 발효)
- EU-요르단 FTA(2002년 5월 1일 발효)
- EU-칠레 FTA(2003년 2월 1일 발효(상품)/2005년 3월 1일 발효(서비스))
- EU-레바논 FTA(2003년 3월 1일 발효)
- EU-이집트 FTA(2004년 6월 1일 발효)
- EU-알제리 FTA(2005년 9월 1일 발효)
- EU-알바니아 FTA(2006년 12월 1일 발효(상품)/2009년 4월 1일 발효(서비스))
- EU-몬테네그로 FTA(2008년 1월 1일 발효(상품)/2010년 5월 1일 발효(서비스))
- EU-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FTA(2008년 7월 1일 발효)
- EU-CARIFORUM States EPA(2008년 11월 1일 발효)
- EU-코트디부아르 FTA(2009년 1월 1일 발효)
- EU-카메룬 FTA(2009년 10월 1일 발효)
- EU-세르비아 FTA(2010년 2월 1일 발효)
- EU-한국 FTA(2011년 7월 1일 발효)⁹⁴⁾

94) FTA포털(<http://www.fta.go.kr/eu/apply/1/>, 2015. 6. 24. 조회)

〈표 Ⅲ-12〉 EU의 Pan-Euro 원산지규정의 구성체계

Title I	정의규정(제1조 정의)
Title II	원산지물품의 정의 규정(제2조 내지 제11조) 일반조건, 누적조항, 완전획득, 충분한 공정 및 가공, 불충분공정 및 가공, 적용단위, 약세사리, 잔여부품 및 도구, 센트, 중립재 등
Title III	영역 요건(제12조 내지 제14조) 영역원칙, 직접운송, 전시회
Title IV	관세환급 및 면제(제15조)
Title V	원산지증명(제16조 내지 제31조) 일반조건, 원산지증명서 발급, 회계분리, 승인된 수출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 제출, 분할수입,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지원서류, 불일치 및 오류 등
Title VI	행정협력(제32조 내지 제36조) 상호협조, 원산지증명서의 검사, 분쟁해결, 형벌 및 벌금, 자유지역 등
Title VII	Ceuta and Melina(제37조 내지 제40조)
Title VIII	최종규정(제39조 내지 제40조) 원산지규정 수정, 운송 또는 보관중인 물품 등

자료: 남풍우 외, 「EU와의 FTA체결 협상에 따른 범유럽 원산지규정 운용의 특징 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4호, 2007, p.6.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우리나라 원산지 법령체계의 문제점과 선행연구 검토

가. 우리나라 원산지 법령체계의 문제점

1) 법령체계의 복잡성

- 우리나라는 특혜분야에 관해서는 주로 「관세법」과 비특혜분야에 관해서는 「대외무역법」을 기본으로 하여 원산지제도를 운영해 왔음
 - 「관세법」에는 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통관절차상의 원산지 요건을, 「대외무역법」에는 국내 유통단계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적의 원산지제도를 운영
 - － 원산지표시와 관련해서는 두 법령의 운영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관세법」에는 원산지표시가 미비된 경우 통관을 제한하는 통관요건을, 「대외무역법」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 및 표기방법 등을 규정함
 - － 나머지 원산지규정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발급, 사전확인, 벌칙 등을 각 법령에 따라 운영해왔음

- FTA체결이 본격화되면서 원활한 제도의 이행과 체약상대국과의 교역을 지원하기 위해 「FTA 관세특례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각 FTA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검증, 사전심사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FTA별로 상이한 제도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함
 - 「FTA 관세특례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며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
 - 총 25개 조항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통관절차, 원산지 조사,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처벌 등을 규정함

- 이들 원산지 법령에 근거하여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는 각 목적에 따라 일반원산지증명서,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 FTA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될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는 목적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 목적의 일반원산지증명서, GSP, GSTP, APTA 등 일반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음

- 그런데 <표 IV-1>과 같이 특혜목적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근거법령이 「관세법」과 「FTA 관세특례법」 외에 원산지표시의 기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외무역법」에도 근거하고 있어, 각 원산지 관련 법령의 기능과 역할이 모호하게 됨
 - 일반원산지증명서의 통관요건은 「관세법」에, 원산지판정과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발급, 원산지확인, 표시위반에 대한 제재 등은 대외무역법에 규정
 - 일반 관세특혜원산지증명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은 「관세법」에,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결정기준 등은 「대외무역법」에 규정
 - FTA 관세특혜원산지증명서는 각 FTA에 따르되, 통관요건은 「관세법」에, 원산지판정과 원산지절차는 「FTA 관세특례법」에 근거함

- 또한 GATT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 협정의 이행을 위한 법률인 「FTA 관세특례법」이 「관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특혜무역협정인 APTA, GSTP 등의 특혜관세적용은 「관세법」에 근거하고 있음
 - 양자무역협정이 다자무역협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구조상 모순이 유지되고 있음

〈표 IV-1〉 우리나라의 원산지 증명서 구분

구분	비특혜 (일반원산지증명서)	일반특혜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	FTA특혜 (FTA 원산지증명서)
목적	공정무역, 소비자보호 (원산지표시)	다자간 관세혜택 (GSP, GSTP, APTA)	양자간 관세혜택 (FTA)
국내법상 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요건: 관세법 • 원산지 표시: 대외무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판정, 원산지절차 : 대외무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관세법 • 수출물품 원산지발급, 원산지결정기준: 대외무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판정, 원산지절차 : FTA 관세특례법
발급기관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세관	상공회의소, 세관

자료: 박광서(2012), p.50. 참고하여 작성

- 따라서 현행 특혜원산지 관련 법체계하에서는 통일적이고 일관적인 운영이 곤란하고, 수출입기업의 불편과 입법 및 행정상의 제반 낭비와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어서 입법체제의 간소화가 요구됨⁹⁵⁾

2) 중복규정 등

- FTA 원산지규정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수출입기업들이 국가별, 품목별로 원산지규정의 적용이 어렵고 복잡한 가운데, 우리나라 법령상 원산지규정들은 오히려 상이하거나 중복되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주요 법령에는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원산지 조사, 사전심사, 벌칙 등의 원산지판정과 원산지확인에 관한 모든 규정을 두고 있음
- 다만, 비특혜원산지규정으로 원산지표시의 통관요건은 「관세법」에, 원산지표시의 대상 및 표기방법은 「대외무역법」에 규정함

95) 김석오 · 정재완(2010), p.68.

- 원산지결정기준은 원산지증명서의 목적에 따라 국제협정 등 법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각각 규정해야 하지만, 원산지확인절차에 관한 규정, 즉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발급, 원산지 조사, 사전심사 등은 주관부서가 주로 관세청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수출기업의 제도 이용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 사전심사제도를 예로 들면, 물품의 원산지확인에 대한 사항을 관세청에 미리 확인 또는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2(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FTA 관세특례법」 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원산지표시방법의 확인)에 근거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제도 또한 관세청장에 위임하고 있음(「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
 -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 및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데, 일반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만 발급함

- 오히려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모든 원산지증명제도에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FTA 원산지증명 절차에만 운영되고 있음⁹⁶⁾
 -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에 관한 규정은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원산지 증명서)와 관세청 고시인 「인증수출자고시」에만 규정되어 있을 뿐,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의 특혜무역협정 적용대상 수출물품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음

- 동일한 제도가 다른 법령에 중복규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FTA 특혜 이외의 일반특혜 관세 등 다자간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규정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에 혼재되어 있음
 - FTA 이외의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수입물품에 대한 절차는 「관세법」에 규정하고,
 -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발급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과 관세청 고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음

96) 박광서 외 4인(2014), p.160.

-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일반수출물품, 관세양허대상수출물품(GSP, GSTP, APTA, FTA 등)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근거함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는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제반절차를 규정하는데 GSP, GSTP, APTA, FTA 협정국가로 수출되는 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포함
- 한편,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관세청 고시인 「원산지제도 운영에관한고시」에서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세관 및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으로 명시하고 있고, 「대외무역법 시행령」(제91조 제4항)에 관세양허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에 관한 권한을 세관에 위탁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반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대외무역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 「대외무역법」 제37조: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교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선행연구 검토

- 우리나라의 원산지규정이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세법」, 「FTA 관세특례법」과 「대외무역법」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있어 왔음
-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가운데, 김한성 외 2인(2009)⁹⁷⁾과 김석오·정재완(2010)⁹⁸⁾은 법률체제를 통합하는 방안으로 특혜원산지규정을 「FTA 관세

97) 김한성·조미진·양주영, 『무역활성화를 위한 특혜원산지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2009. 7.

특례법」으로 통합하는 방안, 특혜원산지규정을 「관세법」과 「FTA 관세특례법」으로 이원화하는 방안과 특혜와 비특혜원산지규정을 모두 「관세법」에 통합하는 등 세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음

○ 현행 「관세법」으로 통합하는 방법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공통적이며, 특혜와 비특혜 분야로 규정을 개편하거나 별도의 원산지절차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특혜원산지규정은 모두 「FTA 관세특례법」으로 통합하는 제1안은 각 법률 간의 중복 또는 상충에 따른 법적 혼란을 해소하면서, 수출입기업의 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입법·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APTA 및 GSTP에 따른 특혜원산지기준, 원산지증명, 검증절차 등을 반영하고, 「대외무역법」상 특혜수출입원산지증명 및 사후관리 규정을 폐기하는 방법으로 통합(김석오·정재완(2010))

○ 장점: 현행 법령체계의 중복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김한성 외 2인(2009)),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원산지인증수출제도, 특혜관세 사후신청제도 등 「관세법」에서 미비되어 있는 통관특례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별도의 제정절차가 생략됨(김석오·정재완(2010))

○ 단점: 다만, 「FTA 관세특례법」은 GATT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협정의 이행을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APTA 및 GSTP와 같이 GATT에 따라 체결되는 낮은 수준의 특혜무역협정을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김석오·정재완(2010)). 일반적인 「관세법」과 특별법인 「FTA 관세특례법」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음(김한성 외 2인(2009))

□ 제2안으로는 FTA 특혜원산지규정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FTA 관세특례법」으로 유지하되, APTA와 GSTP와 같이 GATT 제25.5조 및 권능조항에 따라 체결되는 특혜무역

98) 김석오·정재완, 「특혜원산지 입법체제 간소화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0-1집, 2010. 4, pp.44-76.

협정과 「대외무역법」상의 특혜수출원산지증명규정을 「관세법」에 통합하여, 「대외무역법」에는 비특혜원산지규정만 두는 방법을 제시함

- 「FTA 관세특례법」에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특혜관세 사후신청제도 및 특혜통관절차에 관한 사항을 「관세법」에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일관성 보완 (김석오 · 정재완(2010))
- 장점: 다자적인 성격의 협정은 「관세법」에, 그렇지 않은 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은 「FTA 관세특례법」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법적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음(김석오 · 정재완(2010))
- 단점: 그러나 「대외무역법」상 특혜수출 원산지증명규정을 「관세법」에 반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관세법」과 APTA 원산지증명 및 검증절차의 주요 내용이 상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기술과 행정비용이 필요함(김석오 · 정재완(2010)). 「관세법」과 「FTA 관세특례법」상의 세율, 협정관세 적용, 사후신청, 사전심사 등의 통관절차는 여전히 이원체제로 운영하게 됨(김한성 외 2인(2009))
 - 「관세법」 제229조 제3항에 따라 2011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법규상 미비점을 보완

□ 마지막으로 대다수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특혜·비특혜 원산지규정을 모두 통합하여 「관세법」 단일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 것으로 결론지음

- 「대외무역법」상의 비특혜원산지규정은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대외무역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관행화된 입법체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관세법」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우려가 있음(김석오 · 정재완(2010))

□ 박광서 외 4인(2014)⁹⁹⁾은 「관세법」 일원화 추진방안으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로 현재 원산지와 관련하여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는 법률을 모두 「원산지통일법(가칭)」이라는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방법 등을 제시함

99) 박광서 외 5인, 『원산지제도 관세법 일원화 및 합리적인 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관세청 연구용역, 2014. 12.

- 두 번째로는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관련 규정을 「관세법」으로 통합하는 방법으로 이는 관세청의 전국적인 일선 조직체계 및 행정역량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
 - 세 번째로 「관세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면서, 관세법상 미비한 원산지표시, 판정,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여 원산지에 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 마지막으로 원산지 관련 법령은 현행으로 유지하되 「관세법」의 하위 법령인 고시 등을 보완하여 원산지제도를 운영하는 데, 법령 정비의 난이도, 타 법률과의 관계 및 기관과의 상충 가능성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가장 용이한 방법이라고 결론지음
- 또한, 오원석 외 3인(2008)은 「대외무역법」의 포지셔닝 및 실효성 강화방안으로 일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판정 및 확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하였음
- 「대외무역법」에는 일반적인 표시원칙만을 규정하도록 하여, 「관세법」보다 상세한 규정들은 고시로 보완하는 등 관련법에 위임하도록 함
 - 원산지 운영에 관한 고시 가운데 원산지표시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원산지표시·판정·확인에 관한 고시(가칭)」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찬가지로 박광서(2012)도 원산지에 관한 기본법이자 총괄법으로서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분야의 완성도를 높여야 함을 강조하였음
- 기타 「대외무역법」과 「FTA관세특례법」상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로는 오원석 외 3인(2008)¹⁰⁰⁾, 정재완 외 2인(2009)¹⁰¹⁾, 최원목·라인호(2012) 및 채형복(2014)¹⁰²⁾ 등이 있음
- 오원석 외 3인(2008)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기준 완화,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의 일원화(상공회의소) 등을 제시

100) 오원석·채형복·박광서·이병문, 『무역환경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원산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사), 지식경제부 연구용역, 2008. 12.

101) 정재완, 신한동, 이제현, 『시중유통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단속체계의 효율화 방안』,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관세청 연구용역, 2009. 12.

102) 채형복, 『원산지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한국무역협회 연구용역, 2014. 6.

- 정재완 외 2인(2009)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용의 문제점으로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수위의 형평성 부족, 법규 내용의 모호성 등을 지적하고,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지정단위를 HS 6단위로 변경, 통관 후 의무이행에 대한 실질적 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과 합리성 확보 등이 필요함을 강조
- 최원목 · 라인호(2012)는 「FTA 관세특례법」과 FTA의 조화방안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정의, 원산지증명의 복잡성,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의 불일치 등을 지적
- 채형복(2014)은 「대외무역법」상 수출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제시

〈표 IV-2〉 원산지 법령체계 관련 선행연구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오원석 외 3인(2008)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판정에 관한 기본법의 기능 강화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법에 위임)
김한성 외 2인(2009), 김석오·정재완 (2010)	① 특혜원산지는 모두 FTA관세특례법으로 통합 - 특혜무역협정을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② 「관세법」-다자협정, 「FTA 관세특례법」-양자협정, 「대외무역법」-비특혜원산지 - 「관세법」에 「FTA 관세특례법」의 특혜통관절차규정과 「대외무역법」의 특혜수출원산지증명규정과 특혜무역 협정 규정 이관 ③ 특혜와 비특혜 모두 「관세법」으로 통합 - 현실적이지 않음
박광서(2012)	원산지표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독립된 통일법으로서 대외무역법상 통합 공고제도를 운영
박광서 외 5인 (2014)	① 「원산지통일법(가칭)」을 제정하여 모든 원산지 관련 규정을 통합 ② 특혜와 비특혜 분야 모두 「관세법」으로 통합 ③ 「관세법」에 비특혜 관련 규정 보완 ④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원산지 법령 보완

자료: 저자 작성

-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종합해보면, 기존의 「관세법」, 「FTA 관세특례법」과 「대외무역법」 체제로 운영하되, 비특혜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대외무역법」의 기능을 공고히 하고 특혜 분야의 법령을 정비하지는 의견으로 추려볼 수 있음

- 아래에서는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원산지 법령체계를 비교하여 각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해보고자 함

2. 국제비교 및 시사점

- 주요 선진국의 입법사례를 정리하면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 원산지규정 모두가 「관세법」 체제로 통일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복잡하고 분산된 법률체제와 대비됨
 - 미국, 호주,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의 경우 특혜 및 비특혜 규정 모두 「관세법」 체제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다만, 조사대상국 모두 「관세법」과 「관세율법」의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임
- 다만, FTA와 같이 특정 국가와의 양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은 미국, 호주와 같이 이행법률을 제정하고 각 개별 규정을 국내법령에 재규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미주형과 EU와 같이 별도의 이행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협정 그 자체를 법률과 동일시하는 유럽형으로 구분됨
 - EU는 FTA 자체를 법률과 동일시하고 있음
 - 호주에서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제외하고는 원산지절차는 FTA를 그대로 준용하며 미국 또한 국내법과 상충하는 규정만을 관세법에 수용함
 -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FTA 이행을 원활히 하는 목적의 법률을 두고 있지만, 수출 물품의 원산지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음
- 미국과 호주에서는 FTA의 원활한 국내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FTA 이행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국내법과 상충되는 협정내용에 대해서는 관세법령 등에 재규정(rewriting)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음¹⁰³⁾

103) 유광현, 김형철, 신성식, 「한·미 FTA 원산지검증 절차를 위한 관세특례법 개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1호, 2011. 2, pp.189-209, p.191.

- 호주의 FTA 이행규정(Customs (Rules of Origin) Regulations)은 「관세법」 하위 규정으로 일반 원산지결정기준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만을 포함하고 원산지증명 및 검증 등 원산지확인절차에 관한 부분은 국내법에 수용하지 않고 FTA 조약을 준용하도록 함
 - 원산지의정서 가운데 제3장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가운데 서류보관의무, 벌칙, 재심 등은 국내법에 규정하였으나 제4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부분은 국내법에 수용하지 않음. 이는 호주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가 우리나라와 같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에도 기인함
- 미국에서도 FTA가 체결될 때마다 「관세법」 내의 FTA 이행규정에 반영되고 있음. 단, NAFTA 및 이행법에는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 원산지확인 및 허위증명에 대한 제재를 모두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은 FTA의 적용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법률에 규정된 내용은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절차에 관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다소 상이한 점이 있음
- 일본의 「EPA 원산지증명법」은 EPA 체약상대국으로 수출되는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절차에 대한 법률로서, 우리나라의 「FTA 관세특례법」과는 달리 양허관세율이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EPA 를 그대로 준용하는 방식을 취함
 - 우리나라와 같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발급한 자의 서류보관 의무, 인증수출자제도, 지정발급기관의 지정,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대한 정보제공 및 벌칙 등 전반적으로 원산지규정의 구성이 유사함
 - 하지만 일본은 사전심사제도를 「관세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를 「EPA 원산지증명법」에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국가별·품목별로 적용하여야 하는 양허관세율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검증 등은 EPA를 그대로 준용함
- 일본의 특혜원산지법률체계를 요약해보면 EPA 수출물품의 원산지절차는 「EPA 원산지증명법」에, 일반특혜관세의 원산지판정과 절차는 「관세잠정조치법」을 따르는데, 이 두 법률 모두 해당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과는 별도로 「관세잠정조치법」에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 등 국내법과 상충되는 협정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¹⁰⁴⁾ 특정 용도에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한 감면 물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벌금 등을 규정
 - 특혜수혜국가의 지정요건, 특혜관세의 적용기간, 원산지인정기준, 직접운송기준, 적용정지, 특혜적용 시 첨부서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제출, 유효기간, 벌칙 등

- 「EPA 원산지증명법」¹⁰⁵⁾에는 EPA 협정관세의 적용절차 등을 제외한 수출물품에 대한 제반 원산지절차를 규정하며 허위 증명 등에 대하여 벌칙을 별도로 규정함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의 의무(서류보관, 오류 확인시 통지 등), 인증수출자제도, 지정발급기관의 지정,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대한 정보제공, 벌칙

- 따라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특혜원산지법령을 복잡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각 법령의 적용범위가 중복되지 않고 명확한 것을 알 수 있음

- 요약해보면 FTA와 같은 양자무역협정의 원산지판정과 원산지절차 규정을 모두 국내법에 수용한 국가는 우리나라뿐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별, 품목별로 적용해야 하는 관세양허율표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FTA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음

104) 유광현 외 2인(2011), p.191.

105)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download/gensanchi/horitsugaiyo.pdf

〈표 IV-3〉 FTA 특혜원산지 법령의 국제비교

구분		우리나라	일본	호주	미국	EU
원산지결정기준		FTA 관세특례법	EPA	관세법	관세법	FTA
원산지 증명서	제출(수입)		관세법	관세법		FTA
	발급(수출)		EPA원산지 증명법	FTA		FTA
검증/조사			관세법	FTA		FTA
사전심사			관세법	FTA		EU관세법
별칙			EPA원산지 증명법	관세법		FTA

자료: 김한성·조미진·양주영(2009), p.138. 참고하여 작성

- 다자무역협정에 의한 특혜관세 적용목적의 원산지법령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은 「관세잠정조치법」을 별도로 운영함
- 비특혜 분야 원산지에 관한 기본법 개념의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됨
 - 호주의 경우 원산지표시대상과 표기방법과 별칙을 규정한 별도의 법이 있으나, 구체적인 표기방법, 제반 절차나 원산지판정기준 등은 「관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표 IV-4〉 비특혜원산지 법령의 국제비교

구분	우리나라	일본	호주	미국	EU
원산지표시 (대상, 방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관세법, 무역표기법	관세법	규정없음
원산지결정기준		관세법	경쟁 및 소비자거래법		EU관세법
원산지증명서 제출(수입) 및 발급(수출)		(수출) 상공회의소법	규정없음		EU관세법
검증/조사		관세법	관세법		EU관세법
사전심사		관세법	규정없음		EU관세법
별칙		(수입) 관세법 (수출) 외국환 관리법, 수출입 거래법 등	관세법, 무역표기법		회원국 국내법

자료: 김한성·조미진·양주영(2009), p.138. 참고하여 작성

V. 소 결

- 원산지 관련 주요법령인 「관세법」, 「FTA 관세특례법」과 「대외무역법」의 목적과 기능이 모호해지면서 이들 법령에 근거하여 수출입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느끼는 원산지제도가 복잡하고 어려워져 이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주요국들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FTA 이행법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특혜원산지와 비특혜원산지 모두 「관세법」에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EU에서는 FTA를 그대로 준용하고 일본에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절차만을 별도의 FTA 이행법에 수용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에서는 관세법에 일부 규정만을 수용
 - 호주에서는 「관세법」에 특혜관세의 적용, 원산지결정기준만을 수용하고 원산지절차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FTA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원산지제도의 근거법령은 삼원화되어 있고 원산지판정과 절차가 중복규정되어 있어 제도 운영의 혼란과 수출입기업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우리나라의 원산지제도는 운영 목적에 따라 「대외무역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특혜원산지제도의 기본법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세법」은 관세의 징수와 수입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FTA 관세특례법」은 현행 FTA 특혜관세적용 수출입물품의 관세징수와 통관 및 관세행정협력 또는 FTA 특혜를 적용하고자 하는 수출물품의 신속통관에 관한 규정들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행과 마찬가지로 특혜원산지는 「FTA 관세특례법」과 「관세법」에 의거하여 운영하되,
 - 「FTA 관세특례법」의 적용범위를 현행과 같이 수출입물품의 FTA 이행을 위하여 필

요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과 FTA에 규정된 계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것인지, FTA 특혜를 적용하고자 하는 수출물품의 신속통관에 한정하여 현행 「FTA 관세특례법」상 협정관세 세율, 적용, 사후신청, 사전심사 등의 절차를 「관세법」에 이관할 것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음

- 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상 FTA 이외의 특혜관세에 대한 특혜관세의 원산지판정과 원산지절차와 「FTA 관세특례법」의 관세징수와 관련된 절차를 「관세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대외무역법」상 일반특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절차를 「관세법」에 통합, 「FTA 관세특례법」의 특혜관세의 적용, 사후신청 등을 「관세법」에 통합
 - －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FTA 관세특례법」은 수출기업들의 특혜원산지 적용을 위한 법령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동시에 FTA와 국내법이 상충하거나 국내법 간의 상이한 규정이 없도록 국내법에 재규정하는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대외무역법」상 원산지규정들은 비특혜원산지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원칙을 정하되, 「대외무역관리규정」과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의 구체적인 이행규정들은 실질적인 주관부처에 따라 분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업무를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에 근거하여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상공회의소법」에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상공회의소 사업 분야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음¹⁰⁶⁾
 -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2조(원산지판정절차),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세청장에 위탁한 ‘판정 및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권한 이외에도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106) 제3조(사업) 6호에 ‘상공업에 관한 증명·검사와 감정’만을 규정된 반면, 일본 「상공회의소법」 제 9조(사업의 종류) 6항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규정되어 있음

참고문헌

- 김석오 · 정재완, 「특혜원산지 입법체제 간소화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0-1집, 2010. 4, pp.44-76.
- 김상겸 · 박인원 · 박순찬 · 임경수,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 과제』, 연구보고서 11-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 김한성 · 조미진 · 양주영, 『무역활성화를 위한 특혜원산지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2009. 7.
- 김한성 · 조미진 · 박지현 · 김민성 · 양주영, 『국내기업의 한·EU FTA활용 극대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세청 연구용역, 2009. 11.
- 남풍우 · 안재진, 「EU와의 FTA체결 협상에 따른 범유럽 원산지규정 운용의 특징 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4호, 2007.
- 박광서 · 이병문 · 유광현 · 방성철 · 최영주, 『원산지제도 관세법 일원화 및 합리적인 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관세청 연구용역, 2014. 12.
- 박광서, 『FTA체결 확대에 대응한 대외무역법 원산지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지식경제부 용역, 2012. 8.
- 오원석 · 채형복 · 박광서 · 이병문, 『무역환경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원산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사), 지식경제부 연구용역, 2008. 12.
- 유광현 · 김형철 · 신성식, 「한·미 FTA 원산지검증 절차를 위한 관세특례법 개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1호, 2011. 2, pp.189-209.
- 이상엽 · 김미영 · 이민선,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비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정재완 · 신한동 · 이제현, 『시중유통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단속체계의 효율화 방안』,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관세청 연구용역, 2009. 12.
- 정재호 · 김미영 · 김정아, 『주요국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직접운송원칙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조미진 · 김영귀 · 박지현 · 강준하,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연구보고서 11-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주일대한민국대사관 · 도쿄aT센터 · KOTRA토쿄무역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11.

채형복, 『원산지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한국무역협회 연구용역, 2014. 6.

_____, 『유럽연합(EU)의 원산지제도』,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6.

최원목 · 라인호, 『FTA 협정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세법령 개선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2012. 7.

관세청 www.customs.go.kr/

FTA포털 <http://www.fta.go.kr>

일본 관세청 <http://www.customs.go.jp>

일본 무역진흥기구 <http://www.jetro.go.jp/>

미국 관세청 <http://www.cbp.gov/>

미국 상공 회의소 www.amchamkorea.org

미국무역대표부 <https://ustr.gov/>

호주 관세청 <http://customs.gov.au>

호주 법률 정보 사이트 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

호주 외무성 <http://dfat.gov.au/>

호주 상공회의소 <http://www.acci.asn.au/>

호주 산업협회 <http://www.aigroup.com.au/>

유럽연합집행위원회 <http://ec.europa.eu/>

관세연구 15-01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의 국제비교 연구

2015년 8월 23일 인쇄

2015년 8월 30일 발행

저 자 정재호 · 김미영 · 홍현표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ISBN 978-89-8191-785-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